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관의장

제2884호 2009. 1. 2.(금)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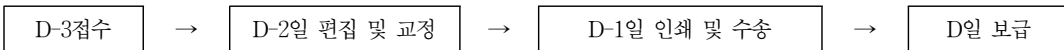
- 제2008-2217호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 제2008-2257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2008-22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고 시

제2008-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7
 제2008-4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7
 제2008-494호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13
 제2008-495호 '09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23
 제2008-500호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내 3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3
 제2008-501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24
 제2008-50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44
 제2008-5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55
 제2008-504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55
 제2008-5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75
 제2008-507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76
 제2008-508호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76
 제2008-50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경미한 변경) 81
 제200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83

◆ 공 고

제2008-22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85
 제2008-2238호 2009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87
 제2008-2243호 보육사업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90
 제2008-2254호 대학과 함께하는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91
 제2008-2259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 징수방식 변경 97
 제2008-2260호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97
 제2008-226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97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8-31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99

◆ 구 고 시

제2008-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종로구) 101
 제2008-102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중구) 106
 제2008-8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용산구) 106
 제2008-87호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에 따른 지형도면작성(용산구) 115
 제2008-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광진구) 115
 제2008-5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광진구) 116
 제2008-9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동대문구) 116
 제2008-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동대문구) 117
 제2008-99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동대문구) 118
 제2008-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중랑구) 122
 제2008-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중랑구) 125
 제200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도봉구) 128
 제2008-55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지정 및 기간)변경 및 지형도면(도봉구) 130
 제2008-1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은평구) 130
 제2008-1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구) 131
 제2008-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구) 132

제2008-1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공공지)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구)	133
제2008-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구)	133
제2008-9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마포구)	134
제2008-34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금천구)	134
제2008-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안)(영등포구)	135
제2008-8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강남구)	136

◆ 구 공 고

제2008-800호 동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종로구)	137
제2008-6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용산구)	140
제2008-675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산구)	140
제2008-676호 건축허가제한 연장(용산구)	147
제2008-12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동대문구)	148
제2008-8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중랑구)	150
제2008-8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열람(중랑구)	153
제2008-862호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도봉구)	155
제2008-8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서대문구)	155
제2008-1134호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강서구)	156
제2008-7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구로구)	158
제2008-570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금천구)	162

◆ 사업소고시

제2008-188호, 194호, 195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4
제2008-196호, 197호, 198호, 199호, 204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5
제2008-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6
제2008-210호, 212호, 21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7
제2008-214호, 215호, 216호, 217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8
제2008-218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169

◆ 사업소공고

제2008-7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중부소방서)	170
제2008-49호 위험물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행정처분(동대문소방서)	170
제2008-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및 공시송달(중랑소방서)	170
제2008-38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구로소방서)	171
제2008-39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구로소방서)	171
제2008-5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강남소방서)	172

◆ 기 타

제2008-4호 지형도면고시(육군제60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176
제2008-292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7
제2008-293호, 294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7
제2008-295호, 296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8

◆ 정 정	179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17호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1월 2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 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식당, 휴게시설 및 매점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수물류담당관(전화: 02)6321-4325, FAX: 02)3707-9769, E-mail : eleganglee@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57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1월 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소득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진료비 책정의 전문성 향상과 입원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라매병원의 4인실 입원료 항목을 추가하고, 제증명료 수수료를 규칙으로 위임함
 - 나. 비급여 의료수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다.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 진료비 감면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 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담당관(전화 02-3707-9239, 팩스 02-3707-91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1월 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을 도시재정비 사업의 건축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으로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하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대상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융자
 -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전액 보조
 - 나. 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40퍼센트 융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예산 범위 내 용자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퍼센트 이내 용자
- 다.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한옥의 수선비용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뉴타운사업1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92<예장동 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1담당관(전화: 02)2171-2541, FAX: 02)2171-2480, E-mail: lwh1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60호(2003.11.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81호(2005.3.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0호(2008.4.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사가정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안교(727번지 일대) ~면목동 647-45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사가정길 확장공사
- 3.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가. 도로확장 : 폭 17m → 30~33m, 연장 1,000m
나. 광장조성 : 19,92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 5. 사업의 기간
가. 당 초 : 2005. 3.24. ~ 2008.12.31.
나. 변 경 : 2005. 3.24. ~ 2009. 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7.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8.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담당관(☎02-3707-8535), 중랑구 도로과(☎02-490-3405)에 관계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6('07.9.1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7('08.7.1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31('08.9.4), 제2008-385('08.1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47-16 ~ 198-1(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지하차도 706m, 연결도로 2,280m(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

- 가 50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3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아.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남부순환로 개통역앞 구조개선공사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지분	관 계 인		소유권이의 의권리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1번 : 변경없음											
12	개봉	233-8	답	당초 : 9 변경 : 24	박동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3	구로구청		압류	박동래 지분만
					박상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조성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51주공아파트 403동 1306호	근저당권	박동래, 박상용박상호, 박상용모든 지분
13	개봉	307-60	대	13	박상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중소기업은행(광명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박동래, 박상용박상호, 박상용모든 지분
					박상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이경희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3				추가
13	개봉	307-60	대	13	서재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캠퍼스 10231	7분의2				
					서영훈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2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지분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개봉	307-48	대	7.1	이경희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3				추가	
					서재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캠퍼스 10231	7분의2					
					서영훈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7동 36호	7분의2					
15	개봉	203-20	대	2	김수갑	도봉구 수유동 53-27	80분의62				추가	
					엄기덕	부천시 소사동 산 40-1	80분의18					
16	개봉	202-19	대	33	황인강	시흥군 서면 광명리 44-8	2분의1				추가	
					황준식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6-708	2분의1					
17	개봉	202-9	대	15	이종혁	구로구 개봉동 202-9					추가	
18	개봉	472	대	53	두산아파트입주민	구로구 개봉동 472						추가
					김윤식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101호	721분의90.125					
19	개봉	306-3	대	13	방용환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102호	721분의90.125					추가
					김경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02고층주공아파트 505-1509	721분의90.125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지분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개봉	306-3	대	13	이영자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105호	721분의 90.125				
					심용성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201호	721분의 90.125				
					윤상태	강서구 화곡3동 1091주공시범아 파트 10-301	721분의 90.125				
					안재찬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203호	721분의 90.125				
					박길만	구로구 개봉동 306-3명성연립 205호	721분의 90.125				

지 장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의 명칭 : 남부순환로 개통역앞 구조개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m ²)	소 유 자		지분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번 변경사항 없음												
7	구로구 개봉동 233-8	창고	샌드위치판넬	당초 : 19번경 : 85		박동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3	구로구청		임류	박동래 지분만
						박상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조성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51주공아파트 403동 1306호	근저당권	박동래, 박상용박상호, 박상용 모든 지분
						박상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중소기업은 행(광명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박동래, 박상용박상호, 박상용 모든 지분
						박상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8 우성아파트 107동 1509호	9분의2				
영업권조서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호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2008년도 제2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9.1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II.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신규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55,196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
 경없음

다. 정비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55,196	1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99	25	
	도 로	9,025	16.35	
	공원/주차장	3,235	5.86	공원 · 주차장 중복결정
	공 원	1,539	2.79	
택지(획지)	택지(획지)	41,397	75	판매, 주거, 업무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지역중심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5	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3,550	혜화동 광장	미아 삼거리	건고294호 (‘78,10.2)	구역내 252m구간 2m 확폭
변경	대로	1	55	35 ~4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3,550 (252)	(하월곡동 104-127)	(하월곡동 88-16)		
기정	대로	3	56	25 ~50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750	종암동	정릉동	건고2493호 (‘66,6.21)	구역내 455m구간 2~13m 확폭
변경	대로	3	56	25 ~63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1,750 (45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104-217)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74	하월곡동 88-16	하월곡동 88-389	서고2002-263 (‘2002,7.2)	구역내 229m구간 4~5m 확폭
변경	중로	2	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74 (229)	(하월곡동 88-16)	(하월곡동 88-909)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28	하월곡동 88-529	하월곡동 104-162	서고2002-263 (‘2002,7.2)	구역내 169m구간 노선축소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9	하월곡동 88-529	하월곡동 88-959		
신설	중로	2	506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5	하월곡동 104-421	하월곡동 88-90		노선신설
기정	중로	2	513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88-909	서고2007-198 (‘2007,6.21.)	가각정리
변경	중로	2	513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88-909		
기정	소로	3	435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2	하월곡동 88-32	하월곡동 88-427	성고2001-59 (2001.6.23)	구역내 32m구간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435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	하월곡동 88-32	하월곡동 88-224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6	하월곡동 104-6	하월곡동 88-754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1	3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8	하월곡동 88-132	하월곡동 104-10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1	하월곡동 88-87	하월곡동 88-175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5	하월곡동 88-215	하월곡동 88-338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9	하월곡동 88-273	하월곡동 88-646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3	하월곡동 88-243	하월곡동 88-551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8	하월곡동 88-54	하월곡동 104-93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91	하월곡동 104-20	하월곡동 104-93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0	하월곡동 88-57	하월곡동 104-82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59	하월곡동 88-14	하월곡동 88-921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9	4	국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108	하월곡동 104-92	하월곡동 104-103	서고2002-263 (2002,7.2)	노선폐지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주차장	하월곡동 104-130번지 일대	2,177	1,058	3,235	지상 공원설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다) 공공공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공공공지	하월곡동 88-64호	1,562	감)1,562	-	서고2002-263 (2002,7.2)	공원으로 변경

라) 공원결정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하월곡동88-958호 (구88-64호)	-	증)1,539	1,539		공공공지폐지후 공원으로 변경
신설	공원	소공원	하월곡동 88-334번지일대		증)3,235	3,235		지하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면 적 (㎡)	
	법정기준(㎡)	설치계획안(㎡)
어린이놀이터	$200+(1,192-200)*1 = 1,192.00$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47조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적용)	1,205
주민운동시설	상업지역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없음 (「주택건설에 관한규정」 제7조(적용특례)3항)	1,498
경 로 당	$40+(1,192-150)*0.1 = 144.20$	150
주민공동시설	$50+(1,192-300)*0.1 = 139.20$	172
문 고	300세대이상, 33.00이상	100
관 리 사무소	$10+(1,192-50)*0.05 = 67.10$	94
휴게시설	300~500세대 : 1개소이상, 500세대이상:1+(1,192-500)/500=2.4개소	4개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55,196	-	-	하월곡동 88-142 일대	358	-	-	3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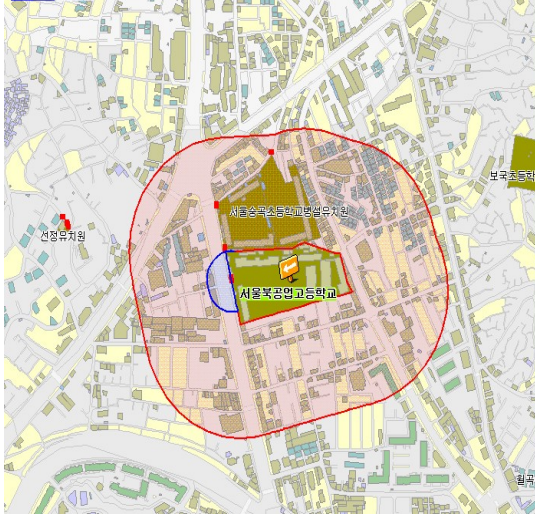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최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55,196	택지	41,397	하월곡동 88-142일대	판매,주거 업무시설	455,900 미만	50 미만	600 미만	120 미만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이상 ▶건설비율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 x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으로 산정된 비율 이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율 :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70% 미만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릉천길 건축한계선 : 5m ▶미아로 및 기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확보된 도로 및 신규 확보될 도로도 녹화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한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 -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 공원 또는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으로 통경축 확보 - 주변지역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유도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인 조경시설물 및 포장재료를 이용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 방지 - 단지내 풍부한 녹지와 순환형 보행자 전용녹도를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토공사시 안전한 흙막이 공법 선정으로 침하 등의 방지 - 공사소음 및 진동대책 : 저소음 무진동 발파 대안 마련, 법적 규제 이내의 소음관리 - 비산분진 대안 마련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으로 분진발생 최소화, 주기적 살수 - 공사안전 대안 마련 :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공사안전 무사고 실시

6.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제6조(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 환경성검토결과 참조(별첨)
 -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영향 추가검토 예정
 -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서 협의 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조3항)

※ 학교(서울북공고)정화구역도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관리처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	현황 : 733세대 계획 : 1,192세대 (중, 459세대)	집중호우시 저지대의 침수우려 및 화재시 소방통로 미확보로 정비 필요

■ 세대수 계획

- 기존세대수 : 733세대 (세입622세대 포함)
- 계획세대수 : 1,192세대 (중, 459세대)

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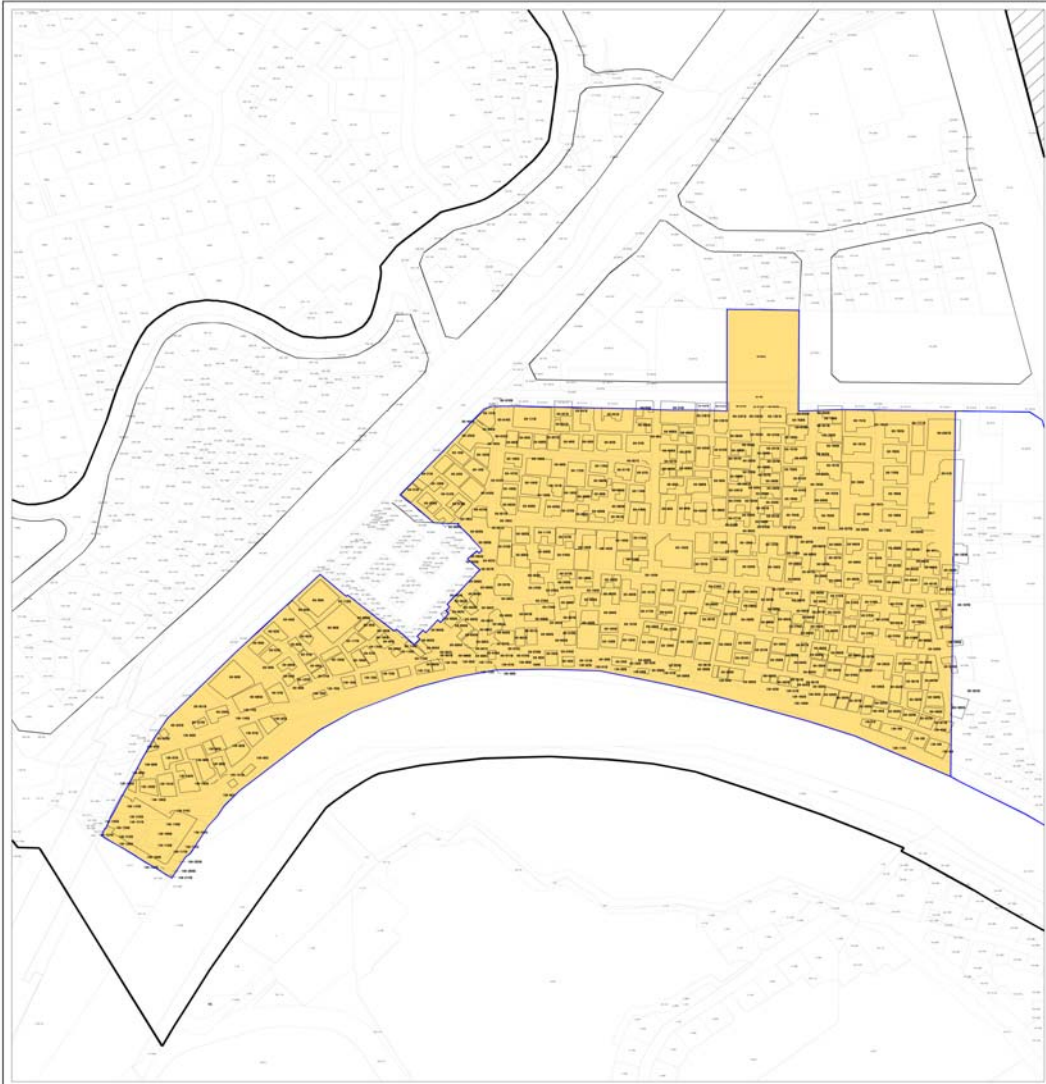
9. 환경성 검토 결과 : 생략(정비구역 지정도서 내용과 같음)

1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전용) (㎡)	비 고
하월곡동 88번지일대	-	-	20,917.14	102	103.74	분양아파트와 혼합배치

Ⅲ. 관계도면


1. 정비구역 결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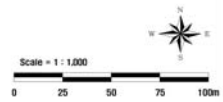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성북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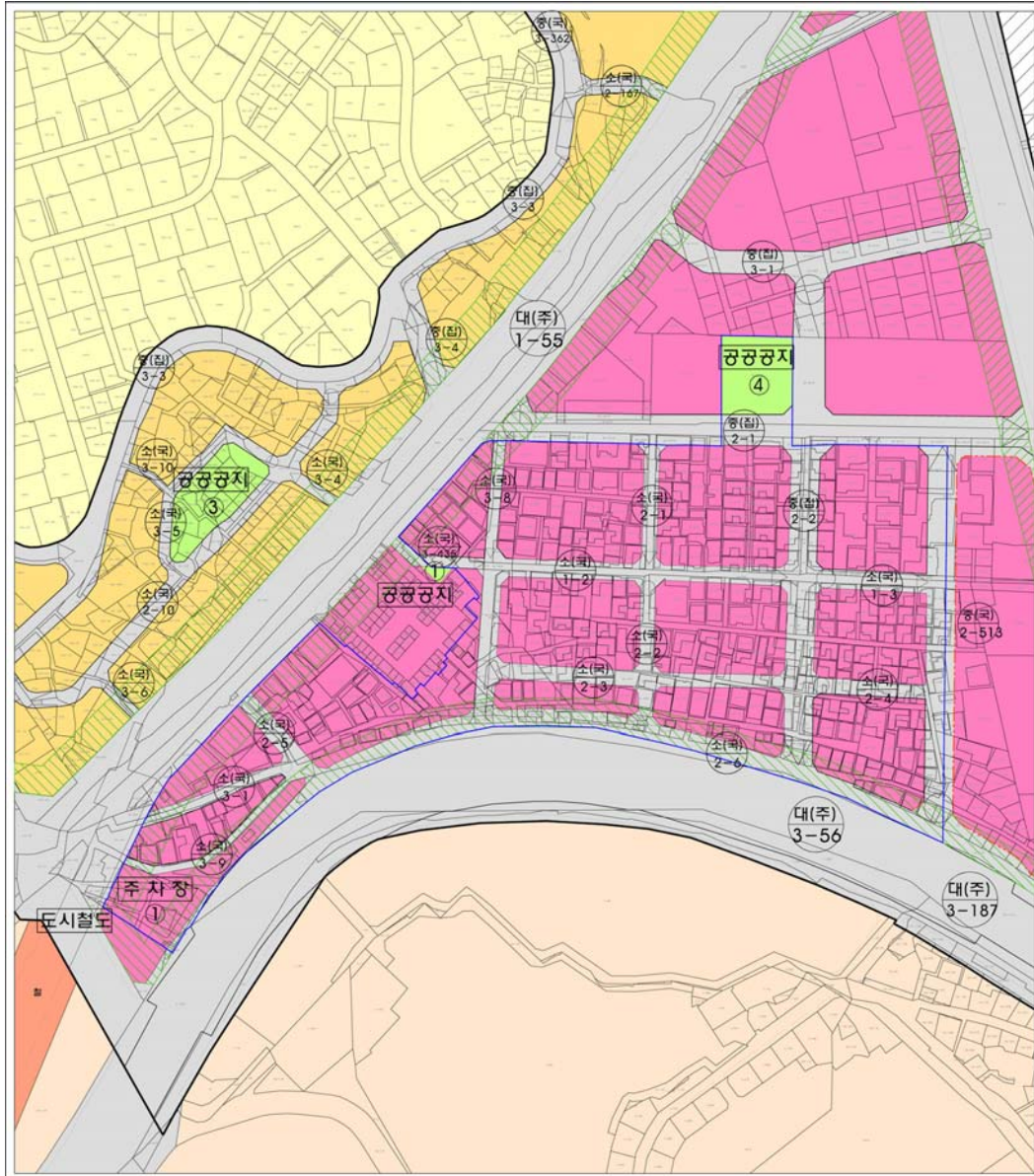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 정비구역결정도 -**

범례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2. 기반시설 결정(변경) 도면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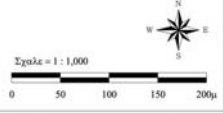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성북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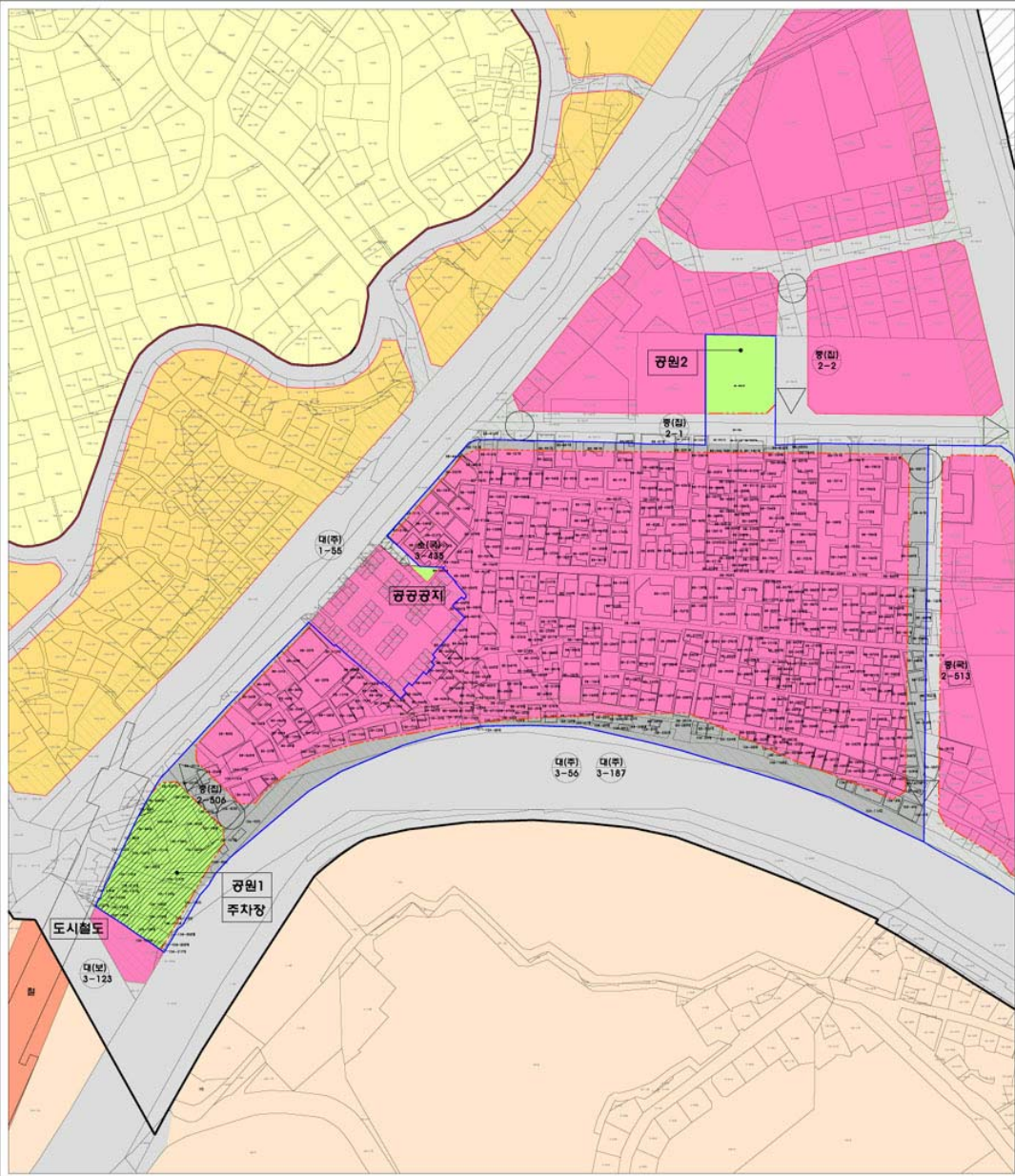
범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용도	구분	용도구분	구분	용도구분	구분
도도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3종일반주거지역	필도부지			
공공공지	준주거지역	중밀여관지구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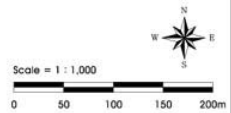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성북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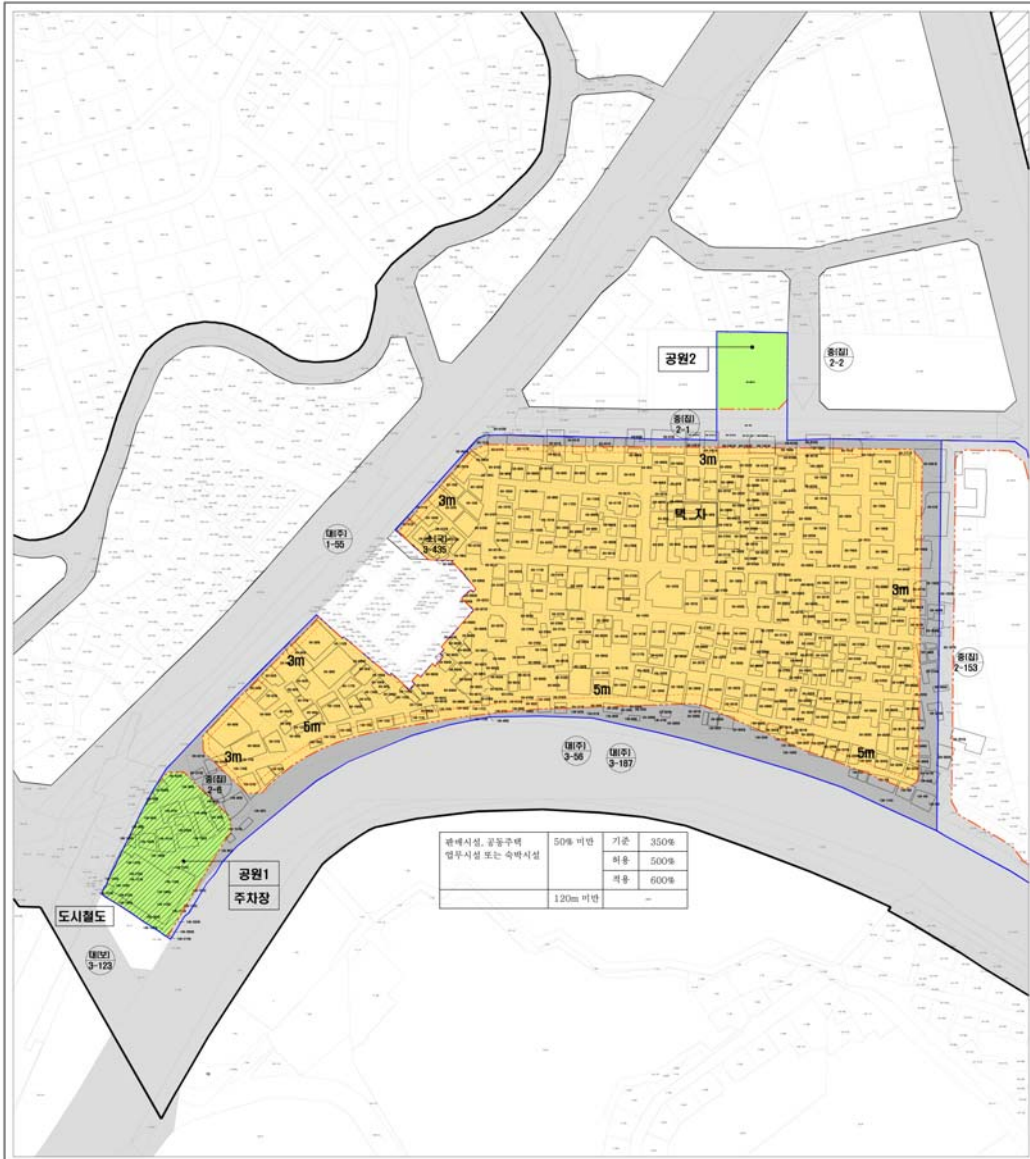
범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용도	구분	용도구분	구분	용도구분	구분
도	도	2용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도	도
주	주	3용일반주거지역	철도부지	주	주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중심미관지구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원1/주차장	공원1/주차장	공원1/주차장	도	도	도



3.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성북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 정비계획결정도 -**

범례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용도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도포			9,025㎡	16.35%	
정비	공원1/주차장		3,235㎡	5.86%	
기타시설	공원2		1,539㎡	2.79%	
	소계		13,799㎡	25.00%	
	택지		41,397㎡	75.00%	
	합계		55,196㎡	100.00%	

지정용도	건축용	용적률
-	높이	-

Scale = 1 : 1,000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및 성북구 뉴타운사업과(☎ 920-377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5호**
‘09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9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기간 : 2009. 1. 1. ~ 2009.12.31.(1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0호**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내 3단지 주택건
 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내 3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1. 사업명 :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3단지)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최령(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호)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내 3단지

4.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내 3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내 3단지	
② 대지면적 (㎡)	33,451.00	33,451.00	
③ 건축면적 (㎡)	6,418.65	6,418.65	
④ 건축연면적 (㎡)	82,532.49	82,532.49	
⑤ 건폐율 (%)	19.19	19.19	
⑥ 용적률 (%)	184.13	184.13	
⑦ 주택규모	아파트 7개동696세대 (지하1층, 지상 7~15층)	아파트 7개동 696세대 (지하1층, 지상 7~15층)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⑦ 주택 규모	주택 형별	국민 임대	39(㎡) : 206(세대) 49(㎡) : 124(세대)	39(㎡) : 206(세대) 49(㎡) : 124(세대)	
		공공 임대	-	114(㎡) : 30(세대)	30세대 증
		공공 분양	84(㎡) : 336(세대) 114(㎡) : 30(세대)	84(㎡) : 336(세대)	30세대 감
⑧ 사 업 기 간			2007. 04 ~ 2009. 08	2007. 04 ~ 2009. 08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로당	82.06(㎡)	82.06(㎡)		
	관리사무소	67.51(㎡)	67.51(㎡)		
	보육시설	174.49(㎡)	174.49(㎡)		
	주민공동시설	142.42(㎡)	142.42(㎡)		
	경비실	41.44(㎡)	41.44(㎡)		
	어린이놀이터	927.98(㎡)	927.98(㎡)		
	기계,전기,발 전기실	717.05(㎡)	717.05(㎡)		
	주차장	751대 (지상:112대, 지하:639대)	751대 (지상:112대, 지하:639대)		
⑩ 공동저수시설			1,087(t)	1,087(t)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3707-8287) 및 SH공사 사업3본부 건축설계팀(☎ : 3410-74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501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4.12)로 결정된 「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17차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6.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1.4.12 결정된 「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6,627	증)398	57,025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1996.10.8)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 경	-	동작구 대방동 405 일대	감)453	• 구적면적 오차보정에 따른 도로면적 감소
변 경	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22 일대	감)54	• 도시계획시설(도로)선과 일치하지 않는 예각 구역 경계 조정
변 경	②	동작구 신대방동 355-26,347-27 일대	증)396	• 구역 남측주변의 지적선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 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변 경	③	동작구 상도3동 322-19 일대	증)79	•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상도 3동 320-5 구, 320-36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하여 구역경계 에 포함
변 경	④	동작구 상도3동 320-5,320-29,345-13, 320-22,23,24,25,26,27, 28,32,36,37,38,39,40 일대	증)429	
변 경	⑤	동작구 대방동 335-31,320-13일대	증)1	• 현황도로 부분의 예각 구역경계 조정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025	-	57,025	100.0	
주거 지역	소계	38,938	-	38,938	68.3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34	감) 19	23,815	41.9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	-	61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7	-	477	0.8	
	준주거지역	13,997	증) 19	14,016	24.5	
상업 지역	소계	18,087	-	18,087	31.7	
	근린상업지역	18,087	-	18,087	31.7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①	동작구 상도3동 324-14구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	• 신설도로 중 획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노량진동240-1~ 대방동400-5 (대방동405-8 ~상도동421-1)	65,280 (7,260)	2,720 (605)	양측 12		상도동길
기정	③	미관지구	일반 미관 지구	신대방동355-26~ 신림5동1428-21 (대방동 406-5 ~대방동 406-8)	34,320 (1,620)	1,437 (135)	양측 12		신림로

주)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545	24,873	-	-	-	3	309	2,892	5	1,236	21,981
대로	2	582	14,550	-	-	-	-	-	-	2	582	14,550
중로	3	580	7,412	-	-	-	1	60	900	2	520	6,512
소로	3	383	2,911	-	-	-	2	249	1,992	1	134	91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주간선 도로	6,490 (502)	노량진역 (상도3동 345-12)	구로동 (대방동 466-6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77호 (62.12.8)	상도동 길	
변경	대로	3	18	25	"	"	"	"	"	-			
기정	대로	3	48	25	주간선 도로	1,920 (80)	대방동 (대방동 406-9)	신림동89 (대방동 408-5)	일반 도로	-	건고시 제738호 (63.12.24)	신림로	
기정	중로	3	37	12	보조 간선 도로	1,030 (60)	(상도3동 345-13)	(상도3동 325-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64호 (75.5.7)		
변경	중로	2	1	15	"	"	"	"	"	-			
기정	소로	1		10~11	집산 도로	(136)	(신대방 2동 408-1)	(신대방2동 408-2)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1	12~18	"	"	(신대방 2동 408-1)	(신대방2동 355-21)	"	-			
기정	소로	2	233	8~10	집산 도로	(328)	상도3동 355 (상도3동 345-13)	대방동 347-2 (상도3동 320-5)	일반 도로	-	서고시 제50호 (70.11.18)		
변경	소로	1	2	10~14	"	(384)	상도3동 355 (상도3동 408-6)	대방동 347-2 (상도3동 320-22)	"	-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6)	(대방동 394-7)	(대방동 394-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43)	(대방동 405-8)	(대방동 407-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6~8	국지 도로	(134)	(상도3동 336-5)	(상도3동 324-72)	일반 도로	-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및 신설내용	변경사유
대3-18	대3-18	지하철출입구 등 도로면적 증가 (96㎡)	• 실제 도로기능을 수행하는 상도동길 지하 철출입구 일대 사유지 도로편입 및 성대시 장변 도로정형화를 위한 선형변경
중3-37	중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12m→15m	•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의 교통계획 반영
소1-	중3-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10~11m→12~18m	•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폭원 및 선형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소2-233	소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8~10m→10m~14m	• 성대시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등의 개선 및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전면도로 확폭
-	소2-1	폭원 8m도로 신설	•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교통계획 반영
-	소2-2	폭원 8m도로 신설	• 상도동길 남북방향 연결도로 신설
-	소3-1	폭원 6~8m도로 신설	•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폭원 및 선형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나) 공간시설

① 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 공지	-	상도3동 324-1, 325-19	63	감)63	-	2001.4.12	-

○ 공공공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폐지	•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공공 공지 신설로 종전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소방파출소)	상도3동 324-21,36	-	증)473	473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신설	•현황파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라)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시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시장	-	상도3동 324-1번지	2,220	감)2,220	-	서고시 제165호 (78.4.19)	

○ 시장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시장 (성대시장)	폐지	•현재 시장기능이 아닌 주상복합기능 도입 •폐지 후 주상복합신축에 따른 종전기능(판매) 유지 가능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	A,B,C,D,E,F,G	구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6개 가구로 구분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간선부	근린상업	1,500㎡	기개발지 및 특별계획구역 제외
	준주거	2,000㎡	
이면부	근린상업	1,000㎡	
	준주거	1,0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
서참조
-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
한 결정(변경)조서
-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근린상업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 터미널 및 향만종합 여객시설 •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1호의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제외) •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B	
	준주거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주거지역 및 일반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 터미널 및 향만종합 여객시설 • 제13호의 공장 •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C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주거지역내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D	

구분		내용		비고	
변경	근린상업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B	
	준주거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C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D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축 시 규정준수

- 절대정화구역 :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m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근린상업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층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1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전면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점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전층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회원제운동시설 		
	준주거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층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회원제운동시설 		

구분		내용		비고	
변경	근린상업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2	
	준주거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3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층전면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4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의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 합이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결정 조서

①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건 폐 율	비 고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용적률 변경결정 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근린상업	상도동길,신림로	300%이하	500%이하	-
		이면도로	300%이하	480%이하	-
		기타	300%이하	450%이하	-
	준주거	상도동길	300%이하	360%이하	-
		이면도로	300%이하	360%이하	-
		기타	300%이하	330%이하	-
변경	근린상업	12m이상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신림로 등)	300%이하	5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a)이내 ※a=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12m미만 이면도로변	300%이하	450%이하	
	준주거	준주거지역 전체	250%이하	360%이하	

③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 기정

항목	내용	적용대상	완화내용	비 고
1. 공동건축		공동건축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간선부 0.3, 이면부 0.2)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 × (간선부 0.15, 이면부 0.10)	
		대지분할 권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0	
2.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를 연결획지와 공동으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3.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0	
4. 공개공지 및 지하통로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적의 5%)÷획지면적}	
		쌈지공원 지정위치 준수시 (침상형공지 포함)	기준용적률 × 0.10	
		침상형공지 조성시 지하콘코스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획지면적) × 1.2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의 피로티 구조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2)-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적의 5%) ÷ 획지면적}	
5.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권장용도 : 근린공공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운동시설중 회원제 운동시설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건축연면적)	
6. 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획지면적) × 1.2	

주)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를 주어지지 않는다.

○ 변경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 α=0.25 · 3필지 이상 : α=0.3
	획지간 공동개발(권장)	최대개발규모 이내 (획지와 획지)	· 기준용적률 × 0.05	· 획지간 공동개발권장계획이 수립된 획지에 한하여 적용
	필지분할	필지 분할가능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지정 /권장)	지정 및 권장사항 준수시	·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 이상 : α=0.2
	맞벽건축	-	· 기준용적률 × 0.1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 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특정층 권장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해당층바닥면적) ×0.1	· 해당층 바닥면적의 30% 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 면적, 의무면적대상 이 아닌 경 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 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침상형구조 : α=1.0 · 개방형구조 : α=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 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 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 면적) × α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 는 지하철, 지하 광장, 지하 보도, 보도육교와 연계시 부여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하철관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 내 설 치 시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 (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 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 미만	

주) 1. 특별계획구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4.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6.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라) 건축물의 높이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기정	최고 높이	• 전구역	• 규제 - 도로폭원에 따라 높이제한 - 건축법규 및 서울시조례 적용
	최저 높이	• 간선가로변	• 권장 - 12m(3층)이상
변경	최고 높이	• 상도동길 및 신림로(25m)	70m이하
		• 성대시장변 및 이면도로변(12m이하)	40m이하

※ 간선도로변 획지단위개발 시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면도로변은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개발(지정) 또는 공동개발(권장)에 따라 건축 시 이면도로변 도로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마)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분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건축 지정선	비고	
기 정	•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및 신림로변	-	-	3m	• 일반미관지구
	• 이면도로변	8m미만 도로변(막 다른 도로포함)	1~2m	-	-	• 이면부(보행 및 차량공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구성부분	-	4m	-	• 간선 및 이면부(보행공간 확보)
변 경	• 간선도로변	상도동길 및 신림로변	3m	-	-	• 보도형 조성 (간선부 보행공간확보)
	• 이면도로변	8m이상 도로변	2m	-	-	• 차도형 조성 (이면부 차도구간 확보)
		8m미만 도로변	1~2m	-	-	
		공공보행통로 조성 부분	-	4m	-	• 보도형 조성 (간선 및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② 건축물의 형태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형태	고층부 탑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특별계획 구역에 대하여 권장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폭 20m이상 도로변	권장
	저층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서터 및 투시벽(벽면적 50%이상) 설치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로티형태도 적용가능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요할 경우 캐노피 적용 	구역전체	규제

③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재료/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폭 20m이상 도로변	규제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변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구역전체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통합간판 설치 유도 	구역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담장설치를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권장

3)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쌈지형공지	• 보행통로 및 가각부	7개소	8개소	쌈지형공지 추가지정	
침상형공지	• 지하철출입구 부분	2개소	1개소	미개발지특별계획구역 내 침상형공지 및 주유소부지의 쌈지형공지 계획으로 기존 침상형공지 폐지	
전면 공지	• 구역전체	간선도로변	3m	3m	보도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이면도로변	2m 이하	2m 이하	차도 및 보도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 지역	A	4m	4m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공공보행통로 구간변경
		B	4m	4m	이면부의 원활한 보행연결을 위해 기존 공공보행 통로 존치
		C	4m	4m	
		D	4m	4m	
		E	4m	4m	
		G	-	6m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변 가각부 및 주요 전면도로변(상도동길 및 신림로)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
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 종전 이면도로변의 개별적인 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폐지	• 지구 내 주차문제 및 주차효율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 성대시장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가로환경조성 도모	•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보차 혼용통로	•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유도

① 차량 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B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C	-	차량출입금지구간	신림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신규지정
D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신림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연장 대방동 406-5, 406-6 일대 차량출입구 신설
E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F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G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② 주차출입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전구역	63개소	폐지	구역 내 이면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개별 필지단위 주차출입구 폐지

③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E,F,G	-	보행자우선도로	성대시장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가로환경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유도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④ 보차혼용통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	보차혼용통로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의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보행자진출입을 위해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신설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시스템 또는 우수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 빗물저수조의 설치에 서울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을 준용	
신재생에너지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투자 또는 계획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자연지반 보존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하여 확보토록 권장	
에너지절약	•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대책마련	

구 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양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이내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이내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구체적인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장의 제20조에서 제22조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 일대	-	증)2,735	2,735	구역신설
신설	②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 일대	-	증)4,995	4,995	구역신설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 일대	2,735	신대방삼거리역일대 생활권중심기능도입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신설	②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 일대	4,995	

다)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① 구역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미개발지 특별계획구역	대방동 394-4번지 일대	2,735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공시설	공공공지	•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특별계획구역 개발 시 지역주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도록 계획 - 지정위치 : 대방동 394-3번지 일대 - 면적 : 구역면적의 5% 이상 ※ 전체 기부채납율 10% 이상 공공기여 유도
	건축물용도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항만, 종합여객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밀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허용용적률	• 300%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 80m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동길변 : 지하철출입구경계선으로부터 3m • 서측·동측·북측 이면도로변 : 2m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상형공지(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동길변 지정된 위치에 침상형공지 조성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침상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
	대지 내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조성(폭원 6m) •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4m)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동길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6m 이상)
	지하철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동길변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조성(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출입구와 침상형공지 및 지하연결통로 등을 연결하여 일체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

※ 공공공지는 추후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주요기능/용도 및 적정주거비율은“공동주택건설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시,2007.4.25”의 내용에 따라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며, 신대방 삼거리역 지하철 출입구를 구역내부로 배치하도록 적극 유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부분에 대해 고층부탑상형을 권장

라)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①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상도3동 324-1번지 일대	4,995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 공 시 설	도 로	• 성대시장 일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구역 동측 및 남측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 성대시장 남측 이면도로 확폭(L=60m, B=8~10m→10~14m), 성대시장 동측 이면도로 확폭(L=328→L=384, B=12m→15m)
	공공공지	• 성대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보행자우선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역 남서측에 배치 - 지정위치 : 상도3동 324-3,5,6,11,14일대 - 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 전체 기부채납율 10% 이상 공공기여 유도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항만,종합여객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 250% / 360% 이하
	상한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적용
	최고높이	• 80m 이하
기 타 사항에 관 한 계 획	건축한계선	• 상도동길변 : 3m • 동측 및 남측 이면도로변 : 3m
	대지내 공지	• 째지형공지(권장) - 상도동길변 및 이면도로변 지정된 위치에 째지형공지 조성 • 공개공지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째지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
	대지 내 통로	•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6m)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상도동길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	•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6m 이상)

※ 공공공지는 추후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용적률 산정은 주거부분과 기타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 주요기능/용도 및 적정주거비율은“공동주택건설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시,2007.4.25”의 내용에 따라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함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 부분에 대해 고층부담상형을 권장

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주1)	변 경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기간 공동개발	신 설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	대지내 공지로 포함하여 폐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용어수정 및 계획항목 변경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해당사항 없으므로 폐지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변경없음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용어수정 및 계획항목 변경

주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1호, 「111개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일괄 결정」 사항임

- 관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으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9), 동작구 도시관리과(☎02-820-1387)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지정 내용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2호	백자청화칠보수복문호 (白磁靑畫七寶壽福文壺)	1점	도자	높이 30.9 입지름 12.6 굽지름 14.6	조선 (19세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3호	백자상감연리지문병 (白磁象嵌連理枝文瓶)	1점	도자	높이 32.2 입지름 8.8 굽지름 9.9	조선 (15세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4호	백자청화화훼문병 (白磁靑畫花卉文瓶)	1점	도자	높이 32.0, 입지름 4.7 굽지름 13.6	조선 (19세기)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5호	백자호(白磁壺)	1점	도자	높이 40.0 입지름 14 굽지름 15.5	조선 (19세기)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리은행은행사 박물관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6호	백자동화원형문각호 (白磁銅畫圓形文角壺)	1점	도자	높이 16.6 입지름 12.2 굽지름 10.0	조선 (18세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7호	백자청화산수인물문사각병 (白磁靑畫山水人物文四角瓶)	1점	도자	높이 12.8 입지름 2.2 굽지름 7.8	조선 (19세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8호	백자청화화분문호 (白磁靑畫花盆文壺)	1점	도자	높이 29.4 입지름 12.9 굽지름 14.2	조선 (18세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9호	대한천일은행 창립관련 문서 및 회계문서 일괄	19건 75점 (문서 4건, 책자 71권)				
279-1	대한천일은행 창립 청원 및 인가서 (大韓天一銀行 創立 請願 및 認可書)	1건(1매)	저지	43×31.5	1899년	
279-2	대한천일은행 정관 청원 및 인가서 (大韓天一銀行 定款 請願 및 認可書)	1건(1매)	저지	36×31.7	1899년	
279-3	대한천일은행 인천·부산·목포 지 점 설치 청원 및 인가서 (大韓天一銀行 仁川釜山木浦支店設 置 請願 및 認可書)	1건(2매)	저지	37×28.2	1899년	
279-4	대한천일은행 개성지점 설치 청원 및 인가서 (大韓天一銀行 開城支店設置 請願 및 認可書)	1건(2매)	저지	38×28.2	1899년	
279-5	대한천일은행 정관 (大韓天一銀行 定款)	1권	저지	27.2×18.5	1906년	
279-6	대한천일은행 지점규칙 (大韓天一銀行 支店規則)	1권	저지	29×19.3	1899년	
279-7	대한천일은행 좌목 (大韓天一銀行 座目)	1권	저지	38×29.5	1902년	
279-8	대한천일은행 공첩존안 (大韓天一銀行 公牒存案)	총2권				
279-8-1	공첩존안 광무3년 3월	1권	저지	29.8×19.5	1899년	
279-8-2	공첩존안 광무4년 7월	1권	저지	29.8×19.5	1900년	
279-9	대한천일은행 고첩 (大韓天一銀行 告牒)	1권	저지	27×19	1899년~ 1906년	
279-10	대한천일은행 일기 (大韓天一銀行 日記)	1권	저지	29×19.7	1899년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279-11	대한천일은행 깃식부 (大韓天一銀行 衿式簿)	1권	저지	28.5×19.5	1899년	
279-12	대한천일은행 깃식과일기 (大韓天一銀行 衿式課日記)	총 6권				
279-12-1	깃식과일기 광무3년 3월	1권	저지	29×19.5	1899년	
279-12-2	깃식과일기 광무4년 1월	1권	저지	29×19.5	1900년	
279-12-3	깃식과일기 광무5년 5월	1권	저지	29×19.5	1901년	
279-12-4	깃식과일기 광무6년 7월	1권	저지	29×19.5	1902년	
279-12-5	깃식과일기 광무8년 1월	1권	저지	29×19.5	1904년	
279-12-6	깃식과일기 광무9년 5월	1권	저지	29×19.5	1905년	
279-13	대한천일은행 정일기 (大韓天一銀行 正日記)	총 32권				
279-13-1	정일기 광무2년 12월	1권	저지	29.6×19.7	1898년	
279-13-2	정일기 광무3년 기해 4월	1권	저지	29.6×19.7	1899년	
279-13-3	정일기 광무3년 기해 5월	1권	저지	29.6×19.7	1899년	
279-13-4	정일기 광무3년 기해 7월	1권	저지	29.6×19.7	1899년	
279-13-5	정일기 광무3년 기해 8월	1권	저지	29.6×19.7	1899년	
279-13-6	정일기 광무4년 경자 9월	1권	저지	29.6×19.7	1900년	
279-13-7	정일기 광무4년 경자 11월	1권	저지	29.6×19.7	1900년	
279-13-8	정일기 광무5년 신축 정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9	정일기 광무5년 신축 2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0	정일기 광무5년 신축 3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1	정일기 광무5년 신축 4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2	정일기 광무5년 신축 4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3	정일기 광무5년 신축 5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4	정일기 광무5년 신축 7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5	정일기 광무5년 신축 8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6	정일기 광무5년 경자 12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7	정일기 광무5년 신축 10월	1권	저지	29.6×19.7	1901년	
279-13-18	정일기 광무6년 신축 12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19	정일기 광무6년 임인 정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0	정일기 광무6년 임인 2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1	정일기 광무6년 임인 3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2	정일기 광무6년 임인 4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3	정일기 광무6년 임인 4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4	정일기 광무6년 임인 5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5	정일기 광무6년 임인 5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6	정일기 광무6년 신축 11월	1권	저지	29.6×19.7	1902년	
279-13-27	정일기 광무7년 계묘 5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279-13-28	정일기 광무7년 계묘 7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279-13-29	정일기 광무7년 계묘 7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279-13-30	정일기 광무7년 계묘 8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279-13-31	정일기 광무7년 계묘 9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279-13-32	정일기 광무7년 계묘 10월	1권	저지	29.6×19.7	1903년	
279-14	대한천일은행 장책 (大韓天一銀行 帳冊)	1권	저지	32.5×23.5	1899년	
279-15	대한천일은행 회계책 (大韓天一銀行 會計冊)	1권	저지	32.7×21.2	1900년	
279-16	대한천일은행 주회계책 (大韓天一銀行 周會計冊)	총 6권				
279-16-1	주회계책 광무4년도 음경자12월	1권	저지	30×19.2	1900년	
279-16-2	주회계책 광무5년도 음신축12월	1권	저지	30×19.2	1901년	
279-16-3	주회계책 광무6년도 음임인12월	1권	저지	30×19.2	1902년	
279-16-4	주회계책 광무7년도 음계묘12월	1권	저지	30×19.2	1903년	
279-16-5	주회계책 광무8년도 음갑진12월	1권	저지	30×19.2	1904년	
279-16-6	주회계책 광무9년도 음을사12월	1권	저지	30×19.2	1905년	
279-17	대한천일은행 출납기부 (大韓天一銀行 出納記簿)	총 2권				
279-17-1	출납기부 광무4년 1월	1권	저지	29.7×20	1900년	
279-17-2	출납기부 광무4년 7월	1권	저지	29.7×20	1900년	
279-18	대한천일은행 탁지부세금출납통장 (大韓天一銀行 度支部税金出納通帳)	1권	저지	32.5×23.5	1899년	
279-19	대한천일은행 무정기임금총부 (大韓天一銀行 無定期任金總簿)	총 14권				
279-19-1	당좌예금통장부 광무10년 7월	1권	저지	29.6×19.4	1906년	
279-19-2	무정기임금기부 광무6년 2월	1권	저지	29.5×19.2	1902년	
279-19-3	무정기임금기부 광무8년 1월	1권	저지	29.5×19.2	1904년	
279-19-4	무정기임금기부 광무10년 1월	1권	저지	29.5×19.2	1906년	
279-19-5	무정기임금총부 광무3년 3월	1권	저지	29.6×19.4	1899년	
279-19-6	무정기임금총부 광무3년 7월	1권	저지	29.6×19.4	1899년	
279-19-7	무정기임금총부 광무4년 1월	1권	저지	29.6×19.4	1900년	
279-19-8	무정기임금총부 광무4년 1월	1권	저지	29.6×19.4	1900년	
279-19-9	무정기임금총부 광무4년 6월	1권	저지	29.6×19.4	1900년	
279-19-10	무정기임금총부 광무5년 2월	1권	저지	29.6×19.4	1901년	
279-19-11	무정기임금총부 광무6년 2월	1권	저지	29.6×19.4	1902년	
279-19-12	무정기임금총부 광무6년 8월	1권	저지	29.6×19.4	1902년	
279-19-13	무정기임금총부 광무7년 1월	1권	저지	29.6×19.4	1903년	
279-19-14	무정기임금총부 광무8년 1월	1권	저지	29.6×19.4	1904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0호	상부암 석불입상(上浮庵 石佛立像)	<문화재> 불상 1구, 토지 1필지 (총 1㎡) <보호구역> 토지 1필지 (총 85.4㎡)	석조	<불상> 총고 283cm 두고 73cm 안고 38cm 안폭 34cm 대좌너비 105cm 대좌폭 104cm	나말여초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00번지 (서울시)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재질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2호	불교계중원 오층석탑 및 표석, 석등 佛敎濟衆院 五層石塔 및 標石, 石燈	3점	석조	<5층석탑> 총고 175cm 기단석 높이 10cm 기단석 폭 61cm 초층 탑신높이 22cm 초층 탑신평폭 29cm 옥개석 폭 50cm <표석> 높이 138cm 너비 35cm <석등> 총고 90cm 화사석 한폭 19.8cm 화사석 높이 28.7cm	1923~ 192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경기여고 내 (경기여고)

2. 문화재 지정 사유

1) 백자청화칠보수복문호(白磁靑畫七寶壽福文壺)

청화로 칠보문과 길상문을 그린 백자항아리이다. 직립한 구연에, 어깨는 팽창하였고 동체는 중간 아래로 가면서 잘룩한 곡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진다.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유색에 짙은 청색 문양이 활달하고 조화롭다. 청화로 어깨 부분에 이중의 원권을 네 곳에 배치하고 그 안에 각각 도안화된 ‘수복’(寶壽)자를 써 넣었다. 원권문 사이에는 칠보문을 그려 문양의 변화와 조화를 꾀하였다. 동체아래 굽 바로 위쪽으로는 두 줄의 청화선을 돌리고, 그 위로 네 곳에 초화문(난초)을 시문하였다. 굽에는 고운 모래 받침의 흔적이 남아있고 동체는 번조 과정에서 한 쪽으로 약간 기울었으며 전면에 잔 빙열이 있다.

이 유물은 전체적으로 문양이 활달하고 배치가 시원하며, 유약의 발색이 좋은 편으

로 관요산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분원산 청화백자의 전형적인 입호(立壺)의 예라 할 수 있으며, 동 시대 유물 가운데 이 항아리와 유사한 유물로는 지정된 예가 드물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2) 백자상감연리지문병(白磁象嵌連理枝文瓶)

조선전기 15세기경에 제작된 흑상감 백자 병이다. 전기의 형식에서 주로 보이는 나팔형의 구연은 끝부분이 둥글게 말려 밖으로 벌어졌고, 목은 가늘고 잘룩하며 어깨는 사선으로 뺀내려 동체 하부에서 팽창하였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안정감이 있으며 어깨와 동체 아래쪽으로는 각각 4줄의 가로 선문대를 두르고 그 사이 넓은 면에 연리지(連理枝)문을 흑상감 하였다. 유약은 청자유약으로 얇게 시유하였는데 목과 굽 주위 일부에는 유약이 흘러내려 몽친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광택이 고르고 용융상태가 좋다. 구연부 내면과 굽 주위에 빙열이 있으며 굽

안바닥에는 찍어 누른 흔적 있다. 굽의 접지면은 시유하지 않았고 굽은 모래가 남아 있다.

이 유물은 15세기 상감백자의 전형적인 유색과 질을 보여주는 예로 문양의 구성이 조화롭고 자토를 이용한 상감도 비교적 잘 시문되었다. 현전하는 상감백자 문양으로는 모란문, 초화문 등이 많은데, 이 병에는 연리지문이 시문되어 조형적으로도 희소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3) 백자청화화훼문병(白磁靑畫花卉文瓶)

조선후기(19세기)의 백자병으로 전면에 청화안료로 시문한 장식적인 병이다.

목에서 구연까지는 곧게 뻗어 올라갔으나 구연끝은 둥글게 말려 살짝 벌어졌다. 어깨에서 사선으로 내려가 저부 아래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팽창된 형태이다. 문양은 전체를 청화안료로 그렸는데, 목의 상단에 격자문대를 돌렸고, 하단에는 파초잎 문양대·격자문대·연관문대·박쥐문대 등을 돌려 동체에 문양이 가득하고 화려하다. 동체 중심부에는 길상문자를 도안화하여 그렸고, 그 주위에 연화당초문을 그려 마치 문자무늬를 에워싸고 장식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동체 저부 굽 바로 윗쪽으로는 뇌문대를 돌리고 굽 주위로는 1줄 선을 돌렸다. 유색은 담청색조를 띠며 빙렬이 거의 없고 용융상태가 좋다. 굽 접지면은 사용한 듯 번조반침을 같아내었으나 바닥 한 곳에 모래반침 흔적이 남아있다.

이 유물은 형태가 안정감이 있고 비례가 좋으며, 유약의 발색과 문양의 시문상태도 우수하다. 또한 문양의 구성도 화려하여 청화백자들 가운데에서도 공예적 장식성이 돋보이는 예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4) 백자호(白磁壺)

조선후기(19세기)에 제작된 순백자 대호

이다. 구연은 수직으로 높고, 동체는 어깨에서 팽창하다가 중간 아래로 가면서 급격히 좁아진 형태이다. 기면 전체에는 문양이 없으며 유색은 담청색을 띤다. 구연 윗쪽으로는 가는 음각선을 돌렸다. 구연과 동체의 저부, 굽 주위 등에 부분적으로 유약이 묻쳐서 태토가 드러난 곳이 있다. 또, 번조시 요변에 의해 동체일부가 열은 황색으로 발색된 곳이 있다. 몸체에는 군데군데 모래가 붙어있고, 저부에는 유면에 기포가 생긴 곳이 있다. 굽 접지면과 굽 안바닥에는 번조반침으로 사용했던 고운모래가 가득 붙어있다.

이 유물은 번조시에 동체가 약간 틀어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문양이 없는 예로서는 드물며 전형적인 분원 후기 백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5) 백자동화원형문각호(白磁銅畫圓形文角壺)

조선후기의 동화백자로 둥글게 성형한 후 동체를 깎아내어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각호(角壺)이다. 구연은 직립하였으며 구연 아래 어깨부분에는 당초문 띠를 돌렸다. 전반적으로 회백색의 어두운 태토에 동화안료로 장식하였는데 동화의 발색이 자춧빛으로 또렷하다. 동체 전면에는 10면에 걸쳐 간격을 맞추어 4곳에 이중 원 권을 두르고 그 안에 새 또는 식물을 그려 장식하였다. 동화의 발색이 좋은 편이며 동체 전면에 시문한 점이 독특하다. 굽은 수직굽이며, 흙물을 바르고 그 위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접지면과 굽바닥에 있다.

조선후기 동화백자는 현전하는 예가 많지 않으며, 제작지 또한 강원도 양구 방산면 일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 유물은 보존상태는 다소 떨어지나 어깨부분에 시문된 당초와 원권안에 있는 새문양의 결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자료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6) 백자청화산수인물문사각병(白磁靑畫山水人物文四角瓶)

조선후기(19세기)의 전형적인 백자청화 사각병으로 4개의 면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직육면체의 동체 윗부분에 가운데가 잘록한 목을 별도로 만들어 붙였다. 동체의 4면에는 가장자리를 1줄의 청화선으로 두르고 근경, 중경, 원경의 산수인물문을 회화적으로 그려 넣었다. 모서리를 깎아 낸듯 좁게 비껴난 어깨부분에도 청화선을 두르고 그 안에 간략한 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청화색은 약간 어두우며 동체전면에 담청색을 띠는 유약을 입혔다. 바닥은 평저(平底)이며 바닥에는 유약을 닦아낸 뒤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이 유물은 조선후기 청화백자 사각병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문양이 다소 간략화되기는 하였으나, 산수문의 변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며, 유색과 태토 역시 조선후기 분원백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7) 백자청화화분문호(白磁靑畫花盆文壺)

조선후기 청화백자 항아리이다. 구연은 곧고 높으며 어깨가 팽창되다가 저부로 가면서 좁아들다가 굽 부분에서 약간 벌어진 형태이다. 유색은 담회청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용융이 잘되어 광택이 좋다. 구연부 바깥쪽과 구연부와 어깨의 경계부위에는 각각 1줄의 청화선을 돌렸다. 어깨에는 여의두문을 돌렸으며 그 밖의 장식문양은 없다. 동체 전면에는 앞뒤로 한 쪽에는 파초가, 다른 한쪽에는 대나무가 심겨진 장탁자 위에 놓인 화분을 그렸으며, 화분문 사이에는 매화문을 그렸다. 청화는 농담을 이용하여 변화 있게 채색하였다. 굽은 안쪽을 깊고 평평하게 깎은 안굽형으로, 전면을 시유하고 모래 섞인 내화토를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유물은 유태와 청화발색, 형태 등에서 매우 우수한 항아리로, 특히 화분에 파초와 대나무를 심어 탁자에 올려 놓은 모티프는 도자기 문양으로서 드물고 특이한 예이다. 필치도 활달하고 화면구성도 시원한 매우 귀한 예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8) 대한천일은행 창립관련 문서 및 회계 문서 일괄

대한천일은행 자료는 1899년에 창립한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정을 보여주는 청원서와 인가서, 정관, 인천·부산 등의 지점 설치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는 창립 및 초기 운영 관련 문서와 회계 관련 문서로서, 기본적으로는 날개 문서와 문서철 및 장부의 형태로 구성된 총 19건75점이다. 날개의 문서들도 남아 있는 천공(穿孔)의 흔적으로 보아 초기에는 문서철에 포함되어 전래하다가 어느 시기에 해체하여 별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천일은행은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되고, 자본금의 확장과 타 은행과의 병합 및 지점망의 확충을 통하여 광복 이후에는 한국상업은행으로, 이후 한빛은행 시기를 거쳐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우리은행이 소장한 대한천일은행관련 자료들은 많은 부분이 일실되었지만 현재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자료들은 성격에 따라 창립 및 초기 운영관련 문서와 회계문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서의 명칭과 내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초기 운영 관련문서

연번	명칭	수량	내용
1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 및 인가서	1건(1매)	광무3년에 대한천일은행의 창립을 탁지부대신에게 요청한 청원서
2	대한천일은행 정관청원 및 인가서	1건(1매)	광무3년에 대한 천일은행 정관을 탁지부대신에게 인허해 주도록 요청한 청원서
3	대한천일은행 인천·부산·목포지점설치 청원 및 인가서	1건(2매)	광무3년에 대한천일은행의 지점을 인천·부산·목포 등지에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청원서
4	대한천일은행 개성지점설치 청원 및 인가서	1건(2매)	광무 3년에 대한천일은행의 지점을 개성에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청원서
5	대한천일은행 정관	1권	광무 10년에 개정된 대한천일은행의 정관
6	대한천일은행 지점규칙	1권	광무 3년에 제정된 대한천일은행의 지점 규칙으로 탁지부대신의 인허를 받음
7	대한천일은행 좌목	1권	대한천일은행의 주주명단으로 영친왕이 주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음
8	대한천일은행 공첩존안	2권	광무 3년 3월부터 대한천일은행과 관련된 공문들을 필사한 서류철로 은행외부공문 및 내부 품의서, 타 기관의 문의에 대한 답변, 청원서 및 위임장 등임
9	대한천일은행 고첩	1권	광무 3년부터 대한천일은행의 주주 총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주주 등에게 알린 서류들을 모아놓은 서류철
10	대한천일은행 일기	1권	광무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천일은행 황성본점의 일지이며, 주요거래내역과 임직원의 출근상황, 운영관련 업무, 출장, 인천지점개설에 관한 이야기 등이 기록됨
11	대한천일은행 깃식부	1권	광무 3년 3월부터 출자금의 입출 상황을 기록한 장부
12	대한천일은행 깃식과일기	6권	1898년 12월부터 1906년 5월까지 깃식과의 업무일지로 행원의 변동, 월급상황, 휴가, 관서운영에 필요한 물건 및 경비 등이 기록됨

나. 대한천일은행 회계문서

연번	명칭	수량	내용
1	대한천일은행 정일기	32권	주장부로서 광무2년 12월부터 광무 7년 10월까지 대한천일은행의 매일의 거래기록을 기입하였던 회계장부임
2	대한천일은행 장책	1권	광무3년 6월에 작성한 것으로, 송도사개부기장부 중 타급장책(채무)과 외상장책(채권)의 내용을 별도의 책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문서로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복식부기적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임
3	대한천일은행 회계책	1권	광무 4년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특별거래처의 대차관계를 결산한 장부임
4	대한천일은행 주회계책	6권	광무4년부터 광무9년까지 작성한 일종의 결산 보고서
5	대한천일은행 출납기부	2권	광무4년 1월부터 작성한 현금출납장부
6	대한천일은행 탁지부세금출납통장	1권	대한제국기 각 지방의 세금을 받아 탁지부에 인계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
7	대한천일은행 무정기임금총부	14권	일종의 당좌예금원장에 해당하는 보조장부로, 정일기와 주회계책의 거래기록 중에서 당좌거래자 별로 구분하여 거래 내용을 담음. 무정기 임금기부 3권과 당좌예금통장부 1권이 포함.

대한천일은행 창립관련 문서류 12건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던 조선은행과 한성은행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근대 은행 및 주식회사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7건의 회계문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송도사개부기 문서 중 가장 완전한 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식부기 형태로 된 회계장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상하책(上下冊)으로, 우리나라 전통 송도 사개부기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대한천일은행 자료는 주장부인 정일기를 비롯하여 같은 회기의 보조장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송도사개부기법 연구에 있어서 매우 희소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개화기에 설립된 근대은행의 창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

여주며, 특히 회계관련자료는 한국에서 고안된 특수한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부(松都四介置簿) 방식으로 작성되어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9) 상부암 석불 좌상

이 불상은 광진구 광장동 상부암에 봉안되어 있는 석불입상으로 원래 불상 전체에 두껍게 호분이 발라져 있었으나, 최근에 호분이 벗겨진 뒤에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머리가 큼직하고 신체가 날씬한 석불입상으로 머리가 신체에 비해서 높고 큼직하며, 육계도 유난히 큰 것이 특징이다. 머리와 육계 앞면이 다소 깨어졌지만, 머리칼은 소발(素髮)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게 넓지만 양감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눈, 코, 입이 단아하고 미소를 띠고 있어서 원만하게 보인다. 귀는 적당하게 길지만 앞 머리카락 한 줄이 내려와 귀의 중심을 가로 질러 위 귀볼 가장장리를 형성하는 매우 이례적인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목은 절단된 것을 붙였고, 상체는 짧지만 단아하며 허리가 잘록하고, 하체는 좌우의 다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양감이 매우 뚜렷하다. 오른손은 가슴에 들어 꽃가지를 든 형상으로 주먹을 쥐었고, 왼손은 내려 옷자락을 잡고 있다.

양어깨를 다 덮고 있는 통견의 얇은 법의는 양팔을 돌아 계단식 옷주름을 보이고, 가슴 앞에서 U자형을 이루다 두 다리 사이로 내려와 다시 U자형을 형성하는 이른바 우전왕(優填王)식 착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착의법은 짧은 상체에 잘록한 허리, 양감이 두드러진 두 다리 등의 신체와 함께 통일신라 8세기 금동불입상 양식의 수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팔의 형태와 계단식 옷주름

은 9세기 불상을 계승한 점도 엿보이고 있어서 이 불상이 9세기 후반 내지 10세초에 조성된 불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대좌는 둥근 연화문 대좌 위의 양련이며, 연화좌 아래의 하단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졌고, 큼직한 복련이 새겨져 있는데 형태상 9세기 연화문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불상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보존상태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서울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나말여초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현상을 변경(이동, 보수 정비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허가 사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불상은 원위치에서 이전하여 동산화되었으므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상의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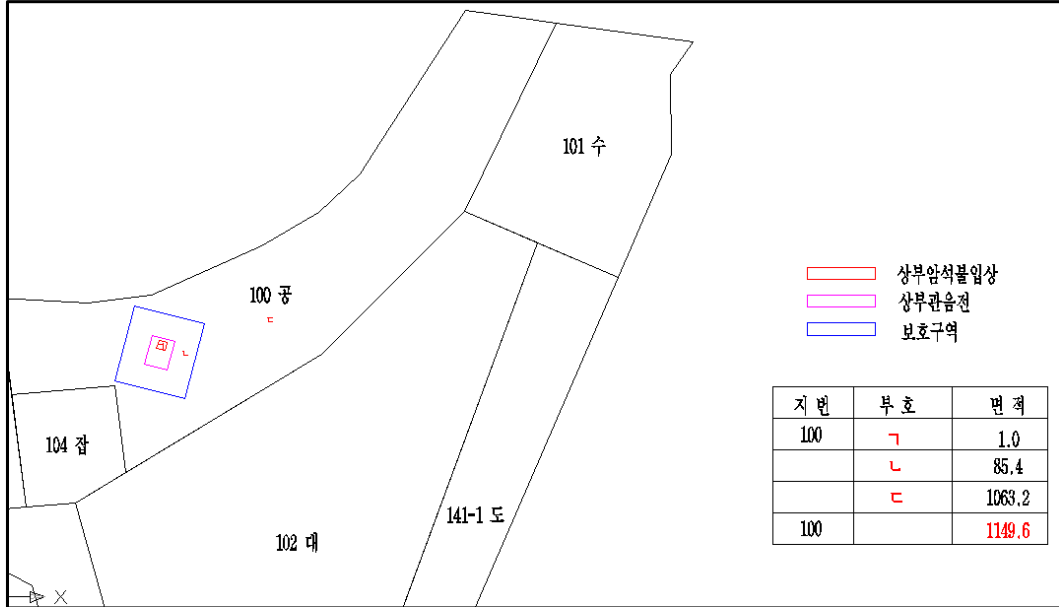
- 문화재 : 불상 1구, 토지 1필지(총 1㎡)

지정대상	지 번	지 적 (단위:㎡)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관리단체
상부암석불입상	광진구 광장동 100번지		1구	서울 특별시	광진구
토지 (불상 점유 부분)	광진구 광장동 100번지	1149.6(1필지)	1㎡		

- 보호구역 : 토지 1필지(총 85.4㎡)

지 번	지 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관리단체
광진구 광장동 100번지	1149.6(1필지)	85.4	서울 특별시	광진구

② 문화재 및 보호구역 도면



③ 관리단체 지정 내용

- 가. 관리단체 : 광진구
- 나. 지정기간 : 2009. 1. 2~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 다. 지정취지 : 당해 문화재를 관할 구로 하여금 실효적으로 보존·관리 토록 하기 위함
- 라. 관리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안전조치 포함), 보호구역의 정비, 보호구역 내 일상관리(청소, 잡풀제거 등 제반사항)

10) 불교제중원 오층석탑 및 표석, 석 등

현재 경기여고 교정에 소재한 오층석탑과 “불교제중원” 표석은 원래 덕수궁(경운궁) 선원전터에 있었던 것으로 경기여고의 정동 교지가 확장되면서 학교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 경기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옮겨진 것이다.

이 석물들의 원 소재지인 덕수궁(경운궁)

선원전터에는 1910년대에 불교중앙포교소(해인사 末寺)가 세워졌고 1923년에는 불교제중원이 설치되었다. 불교제중원은 당시로서는 현대적 의료기관으로서 내과, 외과, 조산과 등을 두었다고 하는데 1925년 재정적인 문제로 폐사되었다. 불교제중원이 비록 친일 승려인 이회광(李晦光 1862-1933)에 의해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그 표석은 근대불교사의 자료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층석탑은 단층의 기단위에 올려진 평면 방형의 석탑으로 탑신부의 체감이 완만하고 옥개석이 매우 두터워 투박하며 둔중한 느낌을 준다. 처마 네 귀퉁이의 전각은 급격한 반전을 보이고 있어 다소 과장된 느낌을 주며 상륜부는 복발 1석으로 조성하였다. 이 석탑은 조선시대 석탑의 전통을 잇고 있으나 매우 단순해진 형태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근대 석탑 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석등은 평면 6각의 화사석 위에 육각 옥개석이 올려져 있는 형태로 석탑과 마

찬가지로 둔중한 느낌을 주며 하대의 괴임돌 하나는 신재(新材)이다. 전체적으로 전통양식에서는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근대 석조물의 한 양상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이 석물들은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20세기초의 석조물로 근대 불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다.

3. 지정 일자 :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교부고시 제738호(1963.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1호(1979.8.3)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09호(2004.4.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07-37호(2007.6.2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8호(2007.10.11)호로 실시계획 변경작성된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내용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구간(변경없음)
 - 가) 구 간 : 은평구 신사동 19-160 ~ 산39-4간
-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가) 규 모 : B=25~32m, L=711m
-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의 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8.12.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09.7.31까지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영업권조서 : 변경없음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 (☎02)350-1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m ²)	비고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길음동 624, 971 일대	1,249,793	기존지구 : 950,000m ² 확장지구 : 299,793m ²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당초 : 2002. 10 ~ 2008. 12
- 변경 : 2002. 10 ~ 2015. 12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기본방향
 - 여유있는 기반시설과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단지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 자연친화적인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
- 목표

-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 뉴타운
- 쾌적한 보행·대중교통 중심 뉴타운
-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뉴타운
-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뉴타운
- 강남과 차별화된 뉴타운
- 주민복지 및 안전을 고려한 뉴타운

4.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가. 확장지구(299,793m²)의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 나. 확장지구(299,793m²)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299,793	100.0		
주거	소계	225,329	75.1	
	주거용지	210,105	70.1	존치관리구역 2,3 포함
	복합용지	15,224	5.0	길음1존치관리구역 : 19,023m ²
기반시설	소계	67,322	22.5	
	도로	29,504	9.8	
	공원	19,188	6.4	3개소
	경관녹지	2,167	0.7	2개소
	공공공지	14,570	4.9	8개소 (1개소:공공공지과 주차장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1,095	0.4	1개소
	어린이도서관	798	0.3	1개소
기타	소계	7,142	2.4	
	종교시설	7,142	2.4	9개소

2) 인구·주택수용계획 : 15,419인 / 5,711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5,711	15,419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740	10,097
	40㎡ 이하	315	850
	40㎡~60㎡	2,103	5,678
	60㎡~85㎡	1,114	3,008
	85㎡ 초과	208	561
존치관리구역	현황	1,971	5,322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 복지시설 등)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2개소	1,893	
문화·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1개소	1,095	
	어린이도서관	1개소	798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13개소	35,925	
공원 시설	소계	3개소	19,188	
	근린공원	1개소	14,807	
	소공원	2개소	4,381	
녹지 시설	경관녹지	2개소	2,167	
공공공지 시설	공공공지	8개소	14,570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 공공공지

5) 교통계획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8. 경관계획)에 명시

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8. 경관계획)에 명시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 부문

○ 주택재개발 부문

구 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33	A	길음동	508-16	3.2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 발사업	전면 개발	
변경	길음1	A	길음동	508-16	10.7	-			3	주택재개 발사업	전면 개발	
기정	46	C	길음동	498	10.3	190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 발사업	전면 개발	
변경	길음2	C	길음동	498	10.5	-			3	주택재개 발사업	전면 개발	

※ 추진단계 : 1단계(2004년 이후), 2단계(2006년 이후), 3단계(2008년 이후)

※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m ²)	비 고
합 계		299,793	
재정비촉진구역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107,534	주택재개발사업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105,629	
존치구역	존치관리구역	길음1존치관리구역	자체개발
		길음2존치관리구역	
		길음3존치관리구역	59,838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분	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534	-	107,53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9,522	감) 69,52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5,863	증) 71,450	107,313	9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149	감) 1,928	221	0.2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분	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5,629	-	105,62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1,745	감) 81,74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970	증) 85,659	105,62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914	감) 3,914	-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90%	239.7%	17.7	19.15 / 35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90%	240.0%	17.6	19.29 / 35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면적(m ²)	기반시설면적(m ²)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순부담률(%)
합 계	213,163	63,523	18,722	17,907	-	26,894	12.6
길음1재정비 촉진구역	107,534	32,300	7,702	12,009	-	12,589	11.7
길음2재정비 촉진구역	105,629	31,223	11,020	5,898	-	14,305	13.5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역명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소 계	40m ² 이하	40m ² ~50m ²	50m ² ~60m ²
합 계	3,740	636	315	257	64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1,746	297	146	121	30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1,994	339	169	136	34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 12 이후	2014. 12 이후	길음1,2재정비촉진구역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21. 방재계획, 22. 에너지순환계획, 23. 특성화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19. 광고물 관리 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제1장 - 20.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구역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신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8-16 일원	107,534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길음1재정비 촉진구역	60m ² 이하	852	4,714	임대주택 297세대
	60m ² ~ 85m ²	749		
	85m ² 이상	145		
	계	1,746		

(3)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증) 107,534	107,534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	증) 32,300	32,300	30.0	
	도로	-	증) 8,634	8,634	7.9	
	공원	-	증) 11,313	11,313	10.6	
	공공공지	-	증) 11,258	11,258	10.5	공공공지(1개소)·주차장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	증) 1,095	1,095	1.0	
택지	1-1	-	증) 70,672	70,672	65.7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	소계	-	증) 4,562	4,562	4.2	
	1-2	-	증) 210	210	0.2	종교용지
	1-3	-	증) 801	801	0.7	종교용지
	1-4	-	증) 1,479	1,479	1.4	종교용지
	1-5	-	증) 533	533	0.5	종교용지
	1-6	-	증) 1,539	1,539	1.4	종교용지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502	20	집산도로	476 (131)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M2	12	집산도로	406	길음동 21-69	길음동 486-7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중로	2	505	15	집산도로	719 (34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06	15	집산도로	58	길음동 1056	길음동 918-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M11	8	국지도로	324	길음동 1098	길음동 1019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중로	3	516	8~12	집산도로	397 (388)	길음동 1098	길음동 1021-3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362	12	국지도로	185	길음동 508-49	길음동 510-53	일반도로		성고 119 (01.1.4)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171	길음동 1263-354	길음동 506-1	일반도로		서고59 (99.3.13)	
폐지	소로	3	67	6	국지도로	300	길음동 510-106	길음동 893-68	일반도로		서고 210 (92.6.27)	

※ 연장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연장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길음동 1059 일원	-	증) 1,251	1,251		지하(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21	공원	근린공원	길음동 909 일원	-	증)14,807 (증 9,545)	14,807 (9,545)		
신설	423	공원	소공원	길음동 1019 일원	-	증) 1,768	1,768		

※ 면적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면적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	증) 309 (증 304)	309 (304)		
신설	87	공공공지	길음동 935 일원	-	증) 8,221	8,221		
신설	88	공공공지	길음동 1056 일원	-	증) 1,251	1,251		지상(주차장과 중복결정)
신설	92	공공공지	길음동 950 일원	-	증) 916	916		
신설	93	공공공지	길음동 1037-7 일원	-	증) 566	566		

※ 면적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면적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사회복지시설	길음동 905 일원	771.2	감)771.2	-	서고 159 (91.6.10)	
신설	23	사회복지시설	길음동 1062-1 일원	-	증)1,095	1,095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107,534	길음동 508-16 일원	701	2	-	699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명칭	면적 (m ²)	명칭	면적(m ²)						평균	최고
신규	길음1 재정비촉진 구역	107,534	1-1	70,672	길음동 508-16 일대	173,681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30% 이하	239.7% 이하	19.15	35
			1-2	210	길음동 893-69 일원	건축법규에 따름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평균	최고										
신규	길음1 재정비축진 구역	107,534	1-3	801	길음동 919-29 일원		종교시설														
			1-4	1,479	길음동 1063 일원							종교시설									
			1-5	533	길음동 1050 일원							종교시설									
			1-6	1,539	길음동 1021-1 일원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 40~50㎡, 50~60㎡, 60~85㎡, 85㎡초과 · 건립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전용면적 60㎡ 이하</th> <th>전용면적60㎡~85㎡</th> <th>전용면적85㎡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건립기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60%이상</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0%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 건립예정세대수 : 1,746세대 (임대주택 : 건립호수의 17%이상) 									구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60㎡~85㎡	전용면적85㎡ 초과	건립기준	60%이상		40%미만	20%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60㎡~85㎡	전용면적85㎡ 초과																		
건립기준	60%이상		40%미만																		
	20%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재정비축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라) 재정비축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2009년	주택재개발조합	증 21호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역명	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계
길음1재정비축진구역	146	121	30	297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구역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신규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원	105,629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길음2재정비 촉진구역	60m ² 이하	1,566	5,383	임대주택 339세대
	60m ² ~ 85m ²	365		
	85m ² 이상	63		
	계	1,994		

(3)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증) 105,629	105,629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	증) 31,223	31,223	29.6	
	도로	-	증) 17,071	17,071	16.1	
	공원	-	증) 7,875	7,875	7.5	
	녹지	-	증) 2,167	2,167	2.1	
	공공공지	-	증) 3,312	3,312	3.1	
	어린이도서관	-	증) 798	798	0.8	
택지	2-1	-	증) 71,826	71,826	68.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	소계	-	증) 2,580	2,580	2.4	
	2-2	-	증) 693	693	0.7	종교용지
	2-3	-	증) 1,157	1,157	1.1	종교용지
	2-4	-	증) 463	463	0.4	종교용지
	2-5	-	증) 267	267	0.3	종교용지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2	12	집산도로	75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도로		서고387 (78.8.3)	
변경	중로	1	503	20	보조간선	724 (391)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502	20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M2	12	집산도로	406	길음동 21-69	길음동 486-7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중로	2	505	15	집산도로	719 (120)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8	8	집산도로	435	길음동 21-78	길음동 503-60	일반도로		서고3 (69.1.18)	
변경	소로	2	48	8	집산도로	73	길음동 21-78	길음동 21-278	일반도로			지구외
신설	중로	2	504	15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3	길음동 21-32	길음동 489-5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128 (9)	길음동 21-46	길음동 489-50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15	12	국지도로	37	길음동 1263-2	길음동 1278-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362	12	국지도로	185	길음동 508-49	길음동 510-53	일반도로		성고 119 (01.1.4)	
폐지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299	길음동 1262-40	길음동 1263-46	일반도로		서고59 (99.3.13)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171	길음동 1263-354	길음동 506-1	일반도로		서고59 (99.3.13)	
폐지	소로	3	177	6	국지도로	277	길음동 504-2	길음동 501-27	일반도로		성고 44 (96.5.1)	
폐지	소로	3	178	6	국지도로	174	길음동 25-30	길음동 502-17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폐지	소로	3	179	8	국지도로	204	길음동 21-500	길음동 510-35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폐지	소로	3	123	6	집산도로	156	길음동 503-60	길음동 501-1	일반도로		서고 105 (83.2.24)	
폐지	소로	3	67	6	국지도로	300	길음동 510-106	길음동 893-68	일반도로		서고 210 (92.6.27)	

* 연장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연장

□ 공원

구분	도면표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21	공원	근린공원	길음동 909 일원	-	증)14,807 (증)5,262	14,807 (증)5,262		
신설	422	공원	소공원	길음동 499-21 일원	-	증)2,613	2,613		

※ 면적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면적

□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7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78-14 일원	-	증) 226	226		
신설	38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1278-5 일원	-	증) 1,941	1,941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	증) 309 (증 5)	309 (5)		
신설	89	공공공지	길음동 476-6 일원	-	증) 960	960		
신설	90	공공공지	길음동 485-6 일원	-	증) 1,260	1,260		
신설	91	공공공지	길음동 489-17 일원	-	증) 1,087	1,087		

※ 면적의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편입면적

□ 도서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도서관	길음동 21-64 일원	-	증) 798	798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105,629	길음동 498 일원	811	-	-	811	-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 ²)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명칭	면적 (m ²)	명칭	면적 (m ²)						평균	최고											
신규	길음2 재정비촉 진구역	105,629	2-1	71,778	길음동 498 일원	174,619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30% 이하	240 % 이하	19.21	35											
			2-2	693	길음동 487-10 일대	건축법규에 따름	종교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2-3	1,157	길음동 503-55 일대		종교시설															
			2-4	463	길음동 503-203 일대		종교시설															
			2-5	267	길음동 21-60 일대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m², 40~50m², 50~60m², 60~85m², 85m²초과 · 건립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전용면적 60m² 이하</th> <th>전용면적60m²~85m²</th> <th>전용면적85m²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건립기 준</td> <td colspan="2">60%이상</td> <td rowspan="2">40%미만</td> </tr> <tr> <td></td> <td>20%이상</td> <td>-</td> </tr> </tbody> </table> · 건립예정세대수 : 1,994세대 (임대주택 : 건립호수의 17%이상) 									구분	전용면적 60m ² 이하	전용면적60m ² ~85m ²	전용면적85m ² 초과	건립기 준	60%이상		40%미만		20%이상	-
구분	전용면적 60m ² 이하	전용면적60m ² ~85m ²	전용면적85m ² 초과																			
건립기 준	60%이상		40%미만																			
	20%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2009년	주택재개발조합	감 17호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역명	40m ² 이하	40~50m ² 이하	50~60m ² 이하	계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169	136	34	339

1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주거지역	299,793	-	299,793	100.0
제2종(7층)일반주거	151,319	감)151,319	-	-
제2종(12층)일반주거	76,390	증)157,163	233,553	77.9
제3종일반주거	72,084	감)5,844	66,240	22.1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길음동 1278-5도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5,844	240	·역세권으로서 촉진구역 용도지역 일원화
2	길음동 971 일원 길음동 494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151,319	240	·역세권으로서 촉진구역 용도지역 일원화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11	7,919 (2,658)	146,997 (35,159)	4	6,310 (1,472)	127,755 (24,506)	4	903 (516)	13,054 (7,677)	3	679 (670)	6,188 (2,976)
중로	9	7,546 (2,404)	144,993 (34,107)	4	6,310 (1,472)	127,755 (24,506)	3	802 (507)	12,030 (7,605)	2	434 (425)	5,208 (1,996)
소로	2	373 (254)	2,004 (1,052)	-	-	-	1	128 (9)	1,024 (72)	1	245 (245)	980 (980)

※ 연장, 면적의 ()은 재정비촉진지구내 편입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7	20	보조간선	5,055	길음동 530-7	수유동	일반도로		서고 301 (76.11.10)	
변경	중로	1	47	20~25	보조간선	5,055 (311)	길음동 530-7	수유동	일반도로			지구내 확폭 (B=5m, L=311)
기정	중로	3	62	12	집산도로	75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도로		서고387 (78.8.3)	
변경	중로	1	503	20	보조간선	724 (63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3	20	국지도로	55	길음동 893-44	길음동 1143	일반도로		서고59 (99.3.13)	
신설	중로	1	502	20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M2	12	집산도로	406	길음동 21-69	길음동 486-7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중로	2	505	15	집산도로	719 (42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8	8	집산도로	435	길음동 21-78	길음동 503-60	일반도로		서고3 (69.1.18)	
변경	소로	2	48	8	집산도로	73	길음동 21-78	길음동 21-278	일반도로			지구외
신설	중로	2	504	15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06	15	집산도로	58	길음동 1056	길음동 918-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4	길음동 1163	길음동 1021-3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49	길음동 1163	길음동 918-8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지구외
기정	소로	2	M11	8	국지도로	324	길음동 1098	길음동 1019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변경	중로	3	516	8~12	집산도로	397 (388)	길음동 1098	길음동 10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3	길음동 21-32	길음동 489-5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128 (9)	길음동 21-46	길음동 489-50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15	12	국지도로	37	길음동 1263-2	길음동 1278-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3	362	12	국지도로	185	길음동 508-49	길음동 510-53	일반도로		성고 119 (01.1.4)	
폐지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299	길음동 1262-40	길음동 1263-46	일반도로		서고59 (99.3.13)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171	길음동 1263-354	길음동 506-1	일반도로		서고59 (99.3.13)	
폐지	소로	3	177	6	국지도로	277	길음동 504-2	길음동 501-27	일반도로		성고 44 (96.5.1)	
폐지	소로	3	178	6	국지도로	174	길음동 25-30	길음동 502-17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폐지	소로	3	179	8	국지도로	204	길음동 21-500	길음동 510-35	일반도로		서고 263 (02.6.27)	
폐지	소로	3	123	6	집산도로	156	길음동 503-60	길음동 501-1	일반도로		서고 105 (83.2.24)	
폐지	소로	3	67	6	국지도로	300	길음동 510-106	길음동 893-68	일반도로		서고 210 (92.6.2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7	중로1-47	• 폭원변경 -폭원 : 20m→20~25m	• 삼양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구내 구간 5m 확폭
중로3-62	중로1-503	• 폭원 및 선형변경 -폭원 : 12m→20m -연장 : 750m→724m	• 도봉로와 미아로의 교통을 분산하고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 도모
-	중로1-502	• 신설 -폭원 : 20m -연장 : 476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중로3-M2	중로2-505	• 폭원 및 선형변경 -폭원 : 12m→15m -연장 : 406m→719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소로2-48	소로2-48	• 연장 축소 -연장 : 435m→73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	중로2-504	• 신설 -폭원 : 15m -연장 : 25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	중로2-506	• 신설 -폭원 : 15m -연장 : 58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	소로1-5	•연장 축소 -연장 : 114m→49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소로2-M11	중로3-516	•폭원 및 연장 변경 -폭원 : 8m→8~12m -연장 : 324m→397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소로2-9	소로2-9	•연장 변경 -연장 : 103m→128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	중로3-515	•신설 -폭원 : 12m -연장 : 37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	소로2-530	•신설 -폭원 : 4~9m -연장 : 245m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
중로3-362	-	•폐지 -폭원 : 12m -연장 : 185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1-104	-	•폐지 -폭원 : 10m -연장 : 299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2-1	-	•폐지 -폭원 : 8m -연장 : 171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3-177	-	•폐지 -폭원 : 6m -연장 : 277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3-178	-	•폐지 -폭원 : 6m -연장 : 174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3-179	-	•폐지 -폭원 : 8m -연장 : 204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3-123	-	•폐지 -폭원 : 6m -연장 : 156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소로3-67	-	•폐지 -폭원 : 6m -연장 : 300m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인한 촉진지구내 도로 정비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길음동 1059 일원	-	증)1,251	1,251		지하(공공공지와 중복결정)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위치 : 길음동 1056 일원 -면적 : 1,25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진지구, 균형발전축진지구 및 인접시설의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지하에 설치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21	공원	근린공원	길음동 909 일원	-	증)14,807	14,807		
신설	422	공원	소공원	길음동 499-21 일원	-	증)2,613	2,613		
신설	423	공원	소공원	길음동 1019 일원	-	증)1,768	1,768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21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면적 : 14,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
422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면적 : 2,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
423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면적 : 1,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7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78-14 일원	-	증)226	226		
신설	38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1278-5 일원	-	증)1,941	1,941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경관녹지	• 신설 -면적 : 226m ²	•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
38	경관녹지	• 신설 -면적 : 1,941m ²	•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	증)309	309		
신설	87	공공공지	길음동 935 일원	-	증)8,221	8,221		
신설	88	공공공지	길음동 1056 일원	-	증)1,251	1,251		지상(주차장과 중복결정)
신설	89	공공공지	길음동 476-6 일원	-	증)960	960		
신설	90	공공공지	길음동 485-6 일원	-	증)1,260	1,260		
신설	91	공공공지	길음동 489-17 일원	-	증)1,087	1,087		
신설	92	공공공지	길음동 950 일원	-	증)916	916		
신설	93	공공공지	길음동 1037-7 일원	-	증)566	566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6	공공공지	• 신설 -면적 : 309m ²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87	공공공지	• 신설 -면적 : 8,221m ²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추후의 탄력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설치
88	공공공지	• 신설 -면적 : 1,251m ²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추후의 탄력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설치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9	공공공지	•신설 -면적 : 960㎡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90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260㎡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91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087㎡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92	공공공지	•신설 -면적 : 916㎡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93	공공공지	•신설 -면적 : 566㎡	• 경관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3)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도서관	길음동 21-64 일원	-	증)798	798		

도서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서관	•신설 -면적 : 798㎡	•어린이의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을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 설치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사회복지시설	길음동 950 일원	771.2	감)771.2	-	서고 159 (91.06.10)	
신설	23	사회복지시설	길음동 1062-1 일원	-	증)1,095	1,095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폐지 - 면적 : 771.2㎡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폐지
23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1,095㎡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길음동 1135 일원	-	증)19,023	19,023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길음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위치 : 길음동 1135 일원 - 면적 : 19,023㎡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에 명시 : 게재생략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9) 및 성북구 뉴타운사업과(☎02-920-377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국방부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청사의 시설물 신축과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	증)276,970.9	276,970.9	-	국방부청사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20%이하	50%이하	4층이하	· 완화내용 : 합참지휘시설(1동) 10층이하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 02)710-33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7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을 결정·고시하

-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연구시설	성북구 하월곡동 39-1호 일대	-	증) 130,606	130,606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30%이하	90%이하	3층(12m)이하	· 높이완화 : 연구동 5개동 7층(28m)이하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 02)920-3722)에 관계도면을 비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8호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1. 강동구 천호뉴타운지구내 천호 1 도시환

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뉴타운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

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구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구역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8,578.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시 고시

다. 정비계획 결정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8,578.00	-	38,578.0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570.65	증) 8,290.35	9,861.00	25.56	
	도 로	1,387.00	증) 5,393.00	6,780.00	17.57	
	공 원	183.65	증) 2,897.35	3,081.00	7.99	
택 지 (획 지)	소 계	37,007.35	감) 8,290.35	28,717.00	74.44	
	획 지 1	37,007.35	감) 8,290.35	25,320.00	65.63	
	획 지 2			3,397.00	8.81	

2) 정비기반시설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40	천호동 382-13	천호동 393-2	일반 도로	1969. 1. 18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2 (8)	천호동 423-250	천호동 393-2	일반 도로		구역내 부분 8m 폐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30	천호동 398-5	천호동 403-9	일반 도로	1990. 10. 24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11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구역내 부분 110m 폐지
기정	소로	1	-	4~8	국지 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1969. 1. 18	2구역 지정시 결정 2006.2.9
변경	중로	3	7	12~15	집산 도로	134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폭원 확폭
기정	소로	3	29	4~15	국지 도로	332	천호동 357-1	천호동 404-1	일반 도로	1969. 1. 18	2구역 지정시 결정 2006.2.9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99 (285)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140	천호동 362-48	천호동 436-2	일반 도로	1993. 4. 9	
변경	소로	3	32	6	국지 도로	122 (18)	천호동 362-47	천호동 436-2	일반 도로		구역내 부분 폐지
폐지	소로	3	5	4	국지 도로	50	천호동 397-17	천호동 402-4	일반 도로	1994. 9. 28	

주) 연장 중 ()는 정비사업구역내 해당부분의 수치임.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주차장	천호동 404-1	3,908.00	감) 3,908.00	-	2001.7.27	12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어린이 공원	천호동 422-1 일원	-	증) 1,081.00	1,081.00		47-1
신 설	-	소공원	천호동 406-14 일원	-	증) 2,000.00	2,000.00		51
변 경	-	어린이 공원	천호동 423-90 일원	1,517.00	감) 183.65	1,333.35	2003.7.25	47

주) 2008. 12. 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저층부 판매시설 주변의 가로활성화와 문화복지시설의 남측
공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신설 소공원은 광장형 공원으로 조성

라)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폐 지	광호시장	시장	천호동420-1 일원	746.00	감) 746.00	-	75.2.10	6
폐 지	천호신시장	시장	천호동422-2 일원	8,519.00	감) 8,519.00	-	76.1. 9	7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 고 (법정기준)
경 로 당	정비사업 구역내	120.00m ²	40m ² + (세대수-150) X 0.10m ² = 105.10m ² 이상
주민공동시설		120.00m ²	50m ² + (세대수-300) X 0.10m ² = 100.10m ² 이상
어린이놀이터		1,247.81m ²	300m ² + (세대수-100) X 1.0m ² = 1,001.00m ² 이상
주민운동시설		732.05m ²	300m ² + (세대수-500)/200 X 150m ² = 600m ² 이상
관리사무소		80.00m ²	10m ² + (세대수-50) X 0.05m ² = 47.55m ² 이상
문 고		50.00m ²	300세대 이상(33m ² 이상)
보육시설		190.00m ²	500세대 이상일 경우 40인 이상 수용 할 수 있는 규모
휴게시설		2개소	500세대 이상일 경우

주)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이 주	
계	-		-	28,717.0	-						
신규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 정비구역	38,578.00	획지1	25,320.0	천호동 423-200 일원	110	-	-	110	-	
			획지2	3,397.0	천호동 422-1 일원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		-	28,717㎡	-	252,072.18㎡	-	42.17% 이하	484.27% 이하	40층이하 135m
신규	천호 뉴타운 1 도시환경 정비구역	38,578㎡	획지 1	25,320㎡	천호동 423-200 일원	244,116.18㎡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43% 이하	540% 이하	지하6 ~ 지상40층 135m
			획지 2	3,397㎡	천호동 422-1 일원	7,956.00㎡	문화 및 복지시설	41% 이하	75% 이하	지하3 ~ 지상5층 22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 105세대(임대주택) · 60㎡ 초과 ~ 85㎡이하 : 106세대 · 85㎡ 초과 : 59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 획지2(문화 및 복지시설 등)선변 : 1.5m(공개공지 2선변), 3m(소3-29선변) 							

주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 2)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함
획지2는 문화 및 복지시설의 타 시설은 불허함

주 3) 보행로와 접한 판매시설 저층부는 3m이상 폭원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공공보행로를 확보함

주 4) 단일사업구역으로서 획지 1(540%)과 획지 2(75%)로 배분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정비함

주 5) 필로티부분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년)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조 합	증) 763세대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부문별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구간	적용내용	
건축한계선	• 획지 1(일반건축물)	• 폭 : 3m	-
	• 획지 2(문화 및 복지시설)	• 폭 : 1.5m, 3m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보행자의 휴식공간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공개공지1 : 1,558.34㎡이상, 공개공지2 : 1,333.94㎡이상 배치)	-

다)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 통로	• 단지내·외부에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3구역내에 일부 5m 계획	-

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구간	적용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 1-163호선 및 중로 1-406호선변(구 천면길)	• 간선도로(구천면길) 및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	-

라.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6)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 480-186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제2005-37호(2005.2.5)로 고

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5-103호(2005.4.28), 제2006-219호(2006.6.29), 제2008-341호(2008.10.2)로 변경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
결된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천호뉴타
운 1구역)에 반영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 구역계 및 구역면적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천호뉴타운 1구역	천호동 423-200일대	38,616 m ²	
변경	상동	상동	38,578 m ²	감) 38 m ²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구분	지역구분	대상지역	토지이용유도	주용도	비고
기정	혼합서비스 지역	천호시장 등 재래시장, 집창촌, 일반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 혼재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유도	판매/영업, 업무, 근린생활, 주거, 문화복지	천호지역 중심

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및 층수계획 (변경 없음)

구분	지역구분	용적률		건폐율	건물최고높이	비고
		기준	상한			
기정	혼합서비스 지역	350%	500%	45% 이하	135m 이하 (40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높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 (주거 36층 2동, 40층 2동)

라. 교통계획 : 보행자 동선 지하화 삭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내용	• 구천면길(천호구사거리~명일역간) 확장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중임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확장에 필요 한 폭원을 확보한다.	• 좌 동	-
	• 간선도로에서의 진·출입을 제한하고 이면도로에서 의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북측에 이면도로(구천면 길과 선사로를 연결)를 확폭 설치한다.	• 좌 동	-
	• 천호1구역과 천호·성내균축지구간을 연결하는 횡단 보도는 균축지구의 로데오거리와 연계해서 보행자 동선 지하화를 추진한다. ※ '08.9.17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시 지하보행자 연결통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통 및 수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삭 제 ※ '08.12.10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 의에서 구천면길 사거리에 보행자 중심 의 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확보하라는 조 건이 있었음.	-

마. 공공시설(기반시설) 계획 :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천면길과 선사로를 연결하는 이면도로를 확폭(폭 15m) 설치한다. -폭 : 4~6m→15m, 길이 : 약 300m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서측 외곽에 폭 12~15m의 도로를 설치하고, 구천면길 확장계획을 반영하여 도로를 확폭한다.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보행자 도로와 구천면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2,000㎡이상의 소공원을 설치한다. 한강가는길 부분의 단지내 문화복지시설부지에 1,084㎡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추가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한강가는길 부분의 단지내 문화복지시설 부지에 1,081㎡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추가 설치한다. 	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호구사거리에서 한강가는 길 연결을 위해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개설한다.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한다. 	• 좌 동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2171-2676)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1860)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2-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

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생태·문화를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동북권의 거점공원으로 특화시켜 지역발전 및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 원	근린공원	중랑구 망우동 42-5번지 일대	56,493	증)91,173	147,666	서울시고시 제2007-46 (07.11.22)	

- 3. 관계도면 : 생 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지형도면은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1) 및
중랑구청 도시개발과(☎490-3384)에 관계도
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0993	2008.11. 6	(주)U-솔비넷 설옥동 110111-155378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IT타워 1203,4호
2	200994	2008.11. 6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진흥원 성운갑 114622-0035317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167 제복합동 대우빌딩
3	200995	2008.11. 6	(주)유니타스 강병태 110111-2332148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15-1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102호
4	200996	2008.11. 10	퍼스트아이엔씨(주) 이상홍 110111-392040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110-4 두산베어스타워 701호
5	200997	2008.11. 11	비비엔에스(주) 이준섭 110111-398940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31-8 신우빌딩6층
6	200998	2008.11. 12	(주)넥스지오 윤운상 110111-2309014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34-1
7	200999	2008.11. 14	(주)넥스원기술산업 문덕기 110111-192290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18-9 경희빌딩 302호
8	201000	2008.11. 14	(주)새아테크 노영창 110111-383384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 별관3층
9	201001	2008.11. 17	(주)케이엠아이 우경욱 110111-0835293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7-4 효신빌딩
10	201002	2008.11. 17	이지케어텍(주) 이철희 110111-2165838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28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1	201003	2008.11. 18	마이빅정보통신(주) 김용욱 110111-396915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51-30 원효상가4동 206호
12	201004	2008.11. 18	(주)멜타이앤씨 정수봉 110111-3472547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77-7 송파앤스위트201호
13	201005	2008.11. 24	(주)디디오넷 강용일 230111-007904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33-4 정보빌딩3층
14	201007	2008.11. 25	(주)티이씨엔코 김창린 110111-0264343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18층
15	201008	2008.11. 25	(주)지엠에스인터내셔널 이성일 110111-1695232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5-1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506호
16	201006	2008.11. 26	미리넷(주) 유광훈 110111-1180514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78 IT벤처타워 서관2층
17	201009	2008.12. 1	(주)이투에스 윤주형 110111-0950885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33-15 정우빌딩 3층
18	201010	2008.12. 2	서전엔지니어링(주) 유경하 110111-173686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5-4 2층
19	201011	2008.12. 3	(주)열림데이터시스템 신석빈 110111-126940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B동 1105호
20	201012	2008.12. 4	(주)지 오 임중태 110111-159707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4 302호
21	201013	2008.12. 5	(주)유리아이 함경식 110111-399625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14-1 302호
22	201014	2008.12. 10	(주)태암이엔티 박강서,이원주 110111-370076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상가 마동 1425호

1.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
사업의 등록 등),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2. 공사등록 일자 : 2008. 11.1 ~ 2008.12.10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
관(02-6360-49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38호
2009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2009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2009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개요

■ 총 재원 - 총 578억원(2008년 대비 82억원 증)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	추진내용
계		578	
시설개선 분야	소 계	277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	48	운동장 놀이시설 개선 (160개 초교)
	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36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360개 중학교)
	급식실 오븐기 설치	15	급식실 오븐기 지원 (70개 초교)
	공부방 조성	50	'08년 수준 자율학습실 조성 (100개 고교)
	철관교체	35	10년 이상 경과 철관 전량교체 (120개 중교, 3,880대)
	책걸상교체	7	10년 이상 책걸상 전량교체 (36개 초,고교 88,000조)
	교단영상장비교체	86	초교 6년 이상 물량 8,039대 교체 (자치구 50억)
프로그램 분야	소 계	254	
	대학생 교육봉사단 운영	18	초,중,고생 무료 학습지도 및 놀토 보육지도
	방과후 공부방	42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 지원 (70개교)
	학교도서관 지원	70	전체학교 도서관 운영비 1천만원씩 지원 (자치구 44억)
	원어민교사 배치	40	'08년 수준 (87개 초, 중교)
	방과후 학교	57	'08년 대비 180개교 증 (총450개교 지원)
	자기주도 학습 지원	15	'08년 대비 113개교 증 (총200개교 지원)
	영어체험 학습 지원	6	'08년 수준 (초등학생 2만명)
우수인재 양성	소 계	37	
	과학영재학교	24	과학영재학교 신축비 3년간 연차 지원
	글로벌리더양성	4	'08년 대비 40명 증 (중학생 84, 고등학생 48)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5	'08년 대비 참여학교 준비금 지급 (학교별 2~3백만원)
	우수기능인배출학교 지원	4	'08년 수준 (24개교 시설비 등 지급)
자치구인센티브사업	10	'08년 대비 3억 증 (12개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2. 사업별 추진내용

■ 신규사업 : 159억 - 5개 사업

①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동생 행복 도우

미)” 프로젝트 (18억원)

사범계 대학생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졸업 전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 등 학습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

- 참여자 : 서울 소재 53개 대학 대학생 1만명
- 수혜대상 : 1,293개 초·중·고교 전체학교 학생
- 사업내용 : 무료 교육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운영장소	운영방법 및 역할
방과후 과목별 숙제지도	방과후 주2~3회 1회 2시간 이상	학교내 유휴교실	개인 또는 그룹별 학생 수준에 맞춰 숙제지도 및 교과목 보충지도
도서관 및 공부방 등 시설 학습지원	주5회 1일 4시간 내외	도서관, 공부방 등	도서관 사서, 독서 및 학습지도 공부방 관리감독 및 학습지도
초등학교 토요일 등지 프로그램	월2회 토요일 1일 4시간 내외	학교 유휴공간	봉사자 역량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 예체능 활동 지원
초등학교 보육교실 지원	보육교실 운영시간 중 2시간 이상	보육교실 및 운동장	보육교사를 도와 학생들 케어와 다양한 예·체 능 활동 유도

②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 일제 개선 (48억원)

시설 평균 17년 정도로 노후하여 학생들의 활용도 낮은 상태로 교사, 학부모, 학교장 공통적으로 개선수요가 높은 사업

- 개선대상 : 160개 초등학교 (사립초 포함) - 1개교당 평균 3천만원
 - 시설종류 : 조합놀이기구, 정글짐, 철봉, 늑목, 놀임봉 등
- #### ③ 중학교 운동장 농구대 등 체육시설 일제 개선 (36억원)

가장 급격한 신체성장과 활동량이 많은 중학생들의 운동을 통한 건전한 심신 단련을 위해 농구대 등 운동기구 일제 개선 지원

- 개선대상 : 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학교 360개교 - 1개교당 1천만원
 - 시설종류 : 농구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위주
- #### ④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42억원)

방과후에 초등학생은 보육교실의 보살핌을, 고등학생은 상시 야간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학생은 방과후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필요

- 사업개요 : 방과후 에듀케어를 포함한 종합지도반 설치, 운영비 지원 (70개교)

- 지원액 : 1교당 6천만원 (3년간 운영비 지원후 자율운영 유도)
- 운영방법
 - 전담교사, 대학생 봉사단 상설 운영지도, 식사제공, 문화체험프로 운영
 - 저소득층 학생 20명~40명 내외 정원, 밤 8시까지 운영
- ⑤ 초등학교 급식실 오븐기 지원 (15억원)
 - 지원대상 : 단체급식용 오븐기가 없는 학교 70개교 (지원 대상의 25%)
 - 지원액 : 1교당 2천2백만원 (시지원 90%, 학교부담 10%)

■ 계속사업 : 263억 - 13개 사업

구 분	예산액 (억원)	사 업 명
시설개선 (3개사업)	92	공부방조성(100개교), 책걸상 교체(120개교), 칠판교체 등
프로그램 운영 (5개사업)	124	원어민교사,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디자인교육 등
우수인재양성 (4개사업)	37	과학영재학교, 글로벌리더,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자치구인센티브	10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종합 평가, 우수구 지원 (12개구)

■ 시-구 매칭펀드 사업 : 156억 - 2개 사업

- 매년 전체학교 대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사업 2~3개를 시-구 공동선정
- 전 자치구가 참여하되 학교분포수, 재정여건 감안 30%~70%까지 차등 적용
- ※ 연간 평균 분담율 : 서울시 60%, 자치구 40%

①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 114억(시 70억, 구 44억)

- 지원대상 : 도서관 보유학교 전체(1,141개 초, 중, 고교)
- 지원내역 : 장서구입비, 독서프로그램 지역주민 공개 행사비, 전시회, 시사회 등
- 지원사유 :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함양과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 지원액 : 1교당 1천만원

② 교단 영상장비교체 : 136억(시 86억, 구 50억)

- 지원대상 : 455개 초교 8,039대 (내구연한 6년 이상 장비 전량) - 사립초 포함
- 지원내역 : 교실내 오래된 TV를 최신 PDP TV 또는 빔프로젝트로 교체
- 지원사유 : 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업 빈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우선 지원
- 지원액 : 1교실당 170만원

3. 사업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8.12.26(금) ~ 2009.1.16(금)

□ 신청대상 및 기준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준	단 가
○ 운동장 놀이시설	초등학교 [서식 1]	- 운동장 놀이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	학교당 최대 40백만원
○ 급식실 오븐기	초등학교 [서식 2]	- 오븐기 미보유 학교	학교당 22백만원
○ 운동장 체육시설	중학교 [서식 3]	-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	학교당 10백만원
○ 노후 칠판교체	중학교 [서식 4]	- 설치,교체후 10년 경과된 칠판 보유학교	1실당 90만원
○ 방과후 공부방	중학교 [서식 5]	- 유휴교실이 있고 방과후 사랑방 운영 희망 학교	학교당 60백만원 (시설3천, 운영3천)
○ 방과 후 학교	초·중·고등학교 [서식 6]	- 희망학교	학교당 10백만원
○ 공부방 조성	고등학교 [서식 7]	- 100석 규모(200m ²)신규조성 및 기존시설 개선희망학교	학교당 50백만원

■ 신청방법

- 사업별 지원 희망학교는 붙임 신청 서식에 의거 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에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신청
 -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노후영상장비 교체, 노후 책걸상교체사업은 시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일괄지원 예정이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은 기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후 지원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서 제출 불요
 - 자기주도학습, 영어체험학습, 중등 디자인교육, 대학생교육봉사단 운영, 우수인재양성사업은 별도의 개별계획에 의거 추후 시행
4. 지원대상학교 선정발표(예정)
- 2009. 2. 4.(수) 서울시홈페이지와 시교육청 및 개별학교에 공문발송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시 교육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청 교육지원담당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 ☎ 2171-2536, 2537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번지
- <http://www.sen.go.kr>
- ☎ 3999-1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43호
보육사업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제2008 - 35호
- 2. 허가년월일 : 2008년 12월 9일
-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루돌프슈타이너 인지학연구센터
-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452-8 신성빌리지 4층
- 5. 대표자 : 이정희
- 6. 설립목적 : 기존 영유아보육의 일률적인 지적교육을 탈피하여 창의성과 상상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창조적 놀이활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토대를 마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54호
대학과 함께하는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교육문제 해결을 촉진하거나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대학과 함께하는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1. 기본 방향

- 경쟁력있는 인재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서 아이디어 제안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학습할 수 있고,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하여 운영 지원
- 이를 통해 교육취약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결손 방지 및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문제의 선순환 구조

- 형성을 유도하며 촉진하는 효과 기대
- 5개 내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 2. 응모 자격 :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1개 대학 단독 또는 타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참여 대학 총장 명의로 사업계획서 제출
- 타 기관이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 정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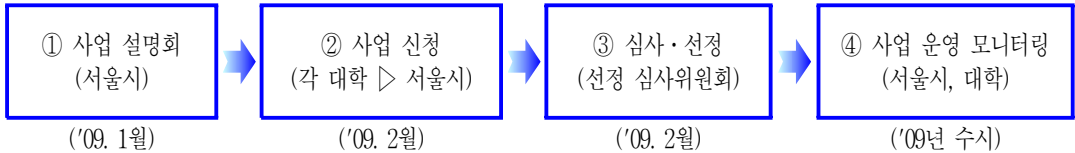
3. 사업 내용

- 학교폭력(폭행, 협박, 따돌림, 성폭력 등)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지역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
- 교육소외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지도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새터민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영재교육 또는 리더십, 봉사정신,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 ※ 교육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자녀,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조손·한부모·장애가정 자녀, 중식지원자 등
- ※ 모든 프로그램에 성교육(性教育) 프로그램 포함 권장

- 프로그램 수혜 대상 : 서울 소재 초·중·고 학생 또는 학부모
- 4. 사업 지원
 - 2009년도 총 사업규모 : 4억원
 - 사업의 규모, 수혜 학생 수, 사업의 파

- 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별 차등 지원
 -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원칙
 - 선정 후 70%, 중간평가 후 30%

5. 사업 추진절차



6. 사업자 선정

- 기본 원칙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기준
 -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교육 기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반영여부 등)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수혜학생 모집·선정방법, 수혜학생 수, 프로그램 운영방법, 소요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
 - 대학교의 사업 수행 의지 (교수 등 참여도 및 담당조직 구성 여부, 대학시설 활용계획 등)
 -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시 고려사항
 - 대학의 경쟁력을 살린 창의적·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지향
 -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성취목표가 뚜렷한 프로그램 지향
 - 기존 민간단체 및 지역자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는 프로그램 지향
 - 초·중·고생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지향
 - 사업예산 편성시 담당 교수 등의 인

- 건비성 경비, 장비 구입비 산출 지양 등
- 7. 사업 기간 : 2009. 3. ~ 2009. 11. (9개월)
- 8. 2009년도 『대학협력 교육지원 시범사업』 사업 설명회
 - 일시 : 2008. 1. 8(목)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별관1동(다산플라자) 13층 소회의실
 - ※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1, 12번 출구
 - 대상 :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 관계자 또는 교수
 - 내용 : 간략한 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 9.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09. 2. 9(월) ~ 2. 13(금)
 - ※ 대학별 1개 이상 프로그램 응모 가능
 - 제출서류
 - 교육지원 시범사업 지원신청 공문 1부.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별첨 양식] 1부
 - 프로그램(사업) 요약서[별첨 양식] 1부
 - 프로그램(사업) 세부 계획서 1부 - 별도 양식 없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파일 (CD, USB형태로 제출)

※ 별첨 양식을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새소식란>)에
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방법

○ E-mail 접수 : son7271@seoul.go.kr

※ 서명이 들어가는 페이지의 경우, 스
캔하여 파일 안에 포함시킴

○ 우편접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교육지원담당관
「대학협력 사업」 담당자

※ 우편 발송 시 2009년 2월 13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 :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4층
교육지원담당관(을지로입구역 1번출
구)

※ 「대학교와 함께하는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공모임을 메
일제목과 우송봉투 겉표지에 표시

□ 심사기간 : 2009. 2.18(수) ~ 2.26(목)

○ 구체적 심사 일시, 장소 등은 추후 개
별 통보

□ 결과발표 : 2009. 2. 27(금)

○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대학은 선정발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를
협의·준비하여 '프로그램 추진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함

○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내에서 심
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 제출된 자료와 저장매체 등은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계획서와 관련
된 일체의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중간 및 결과 보고서 내
용은 추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참
고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원 프로그램 선정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
원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
환하여야 함

a. 승인된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b. 신청서 등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
위로 판명된 경우

c. 사전협의 없이 약정된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거나 혹은 미이행한 경우

d. 중간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e.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담당관
(☎2171-2252~4)으로 문의

[별첨 1]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

2009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

대학개요

대학명			
주 소	(※ 해당부서 홈페이지 기재)		
담당부서 (담당학과)		담당자 (책임교수)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신청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사업경비(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자체부담액	기타(기관, 기업지원금 등)	지원금 신청액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위와 같이 2009년도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2월 일

대 학 명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 부 :

1. 프로그램(사업) 요약서 1부
2. 프로그램(사업) 운영 계획서 1부
3.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별첨 2] - 프로그램(사업) 요약서

2009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요약서

프로그램명						
신청 대학						
사업책임자	성명		직책		팩스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사 업 내 용 요약						
1. 사업명	- 해당 사업의 명칭					
2. 필요성 및 목적	- 해당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					
3. 사업운영방식	- 사업대상(지역명시), 모집규모(학교급별 학생 수 명시) - 참여자 모집방법 등					
4. 사업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업운영횟수(총 회 시간)(1일 시간)					
5. 사업 수행 체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기술					
6. 사업내용 및 방법 가. 나.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을 기술					
7. 사업관리 가. 추진일정 등 나. 조직 구성 및 시설 활용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을 기술 ※ 추진방법 중 본 사업을 위한 학교 인프라 활용계획 포함 ※ 담당 조직 및 인력(본사업 전담인력 기재) 포함					
8.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사업의 평가 계획 및 활용방안 등 포함 기술					
9. 소요예산	- 사업에 필요한 예산 기술 (재원 확보 방안이 우리시 지원예산 외에 자체예산 및 후원예산 별도 기술)					
10. 기 타	※ 제안한 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실적 등 기술(해당 있는 경우)					

※ 프로그램 요약서는 3매 이내 기술 요망

신청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규격

- A4 기준
- 작성 워드프로세서 (국문 : 한글 2002 이상)
- 세부사업계획서 분량 : 30면 이내(표지 및 첨부자료는 제외)

2)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및 설명회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 본 서식을 참고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자료입력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일 기준이며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본 신청서 양식 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할 경우, 제시된 [작성방법], [첨부자료] 등 설명 부분은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사업계획서 하단에 면수(page)를 기재

3) 신청서 작성 방법 문의

- 전화문의 : 서울시청 경영기획실 교육지원담당관 손남신 (02-2171-225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59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 징수방식 변경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제 3조의 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의 2에 의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 징수방식을 수입증지판매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발행기관명 : 서울특별시
2. 발행장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4개소(본원민원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축산물도축장)
3. 계기고유번호: F2811296 (애니텍시스 SD-50P) 5797,5798,5799 (신일테크노 ST-2000)
4. 발행개시일: 2009.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60호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신청자 : (주)유천엔바이로 대표 문찬용
- 가. 공인등록 내용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639
2. 점용목적
 - 섬유디스크필터를 이용한 반류수 및 방류수 처리 실증테스트
 3. 점용기간 : 2008.11.25~2008.12.24(30일간)
 4. 점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0-3(서남물재생센터 제2처리장 최종침천지 부근)
 5. 점용면적 : 22㎡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6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명칭을“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 (2008.3. 28 법률 제8852호)
2. 공인등록일자 : 2009년 1월1일
3. 공인등록 및 폐기 내용

공인종류	등록공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최초사용일)
청인	서울특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인	한글전서체 (정사각형) 3.5cm X3.5cm		2009. 1. 1

나. 공인폐기 내용

공인종류	폐기공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 일자
청인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인	한글전서체 (정사각형) 3.5cm X 3.5cm		2009. 1.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 제2008-31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단위 : 천원)

세		입			출					
		2009년예산액	2008년예산액	비교증감	2009년예산액	2008년예산액	비교증감			
장별	구	분	관별	세		합				
				부분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49,664,332	3,585,315,937	54,348,395	인적자원 운용	3,466,486,124	3,439,094,686	27,391,438
							국 고 지 원 금	0	0	-
							계	3,649,664,332	3,585,315,937	54,348,395
							범정 이전수입	2,349,219,600	2,134,044,000	215,175,600
자치단체 이전수입			학 교 용 지 부 담 금	74,893,000	113,617,000	△38,724,000	교육격차 해소	72,602,868	56,794,026	15,808,842
							비범정 이전수입	4,015,545	6,442,000	△2,426,455
							계	2,428,128,145	2,254,103,000	174,025,145
							기타이전수입	4,307,319	4,752,000	△444,681
기타이전 수입			자산수입	4,549,433	839,983	3,709,450	평생교육	16,232,662	11,204,205	5,028,457
							기타지원금	4,307,319	4,752,000	△444,681
							계	2,428,128,145	2,254,103,000	174,025,145
							직업교육	23,504,064	23,879,125	△375,061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72,700,897	165,063,016	7,637,881	계	39,736,726	35,083,330	4,653,396
							행정활동수입	5,210,765	4,484,889	725,876
							계	202,419,659	180,332,528	22,087,131
							지방채상환원리금	185,097,185	218,268,758	△33,171,573
지방교육 채			지 방 교 육 채	0	39,525,000	△39,525,000	예비비밀기타	9,250,020	9,877,881	△627,861
							계	202,419,659	180,332,528	22,087,131
							지 방 교 육 채	0	39,525,000	△39,525,000
							합	6,315,817,715	6,157,396,328	158,421,387
기타			진년도이월금	31,299,260	83,367,863	△52,069,603	계	307,837,119	369,261,446	△61,424,327
							합	6,315,817,715	6,157,396,328	158,421,387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08-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 1. 건설부고시제432호('63.07.01)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제2008-617호(2008.10.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2008-59호(2008.11.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명륜동2가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종 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명륜동2가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명륜동2가224-4~225-9간
- 라. 사업의 규모 : B=6m, L=15m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 50
- 바.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변경인가조서 참조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변 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중 로 구 청 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제 지	지 목	수 용 면 적(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명륜동2가222-2	대	1.0	이동준 중로구 혜화동22-56혜화 쉐르빌 101호	근저당	㈜국민은 행	중구 남대문로27가9-1					
2	명륜동2가222-3	대	10.9	이동준 중로구 혜화동22-56혜화 쉐르빌 101호	근저당	㈜국민은 행	중구 남대문로27가9-1					
3	명륜동2가224-4	대	10.4	이동영 성동구 행당동349행당동 한신(아)113-1302	근저당	기업은행	을지로2가36-1					"변동사항 없음"
4	명륜동2가225-9	대	22.6	진화자 중로구 명륜동2가137-2	압류	중로구	세무과					

물 건 변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동2가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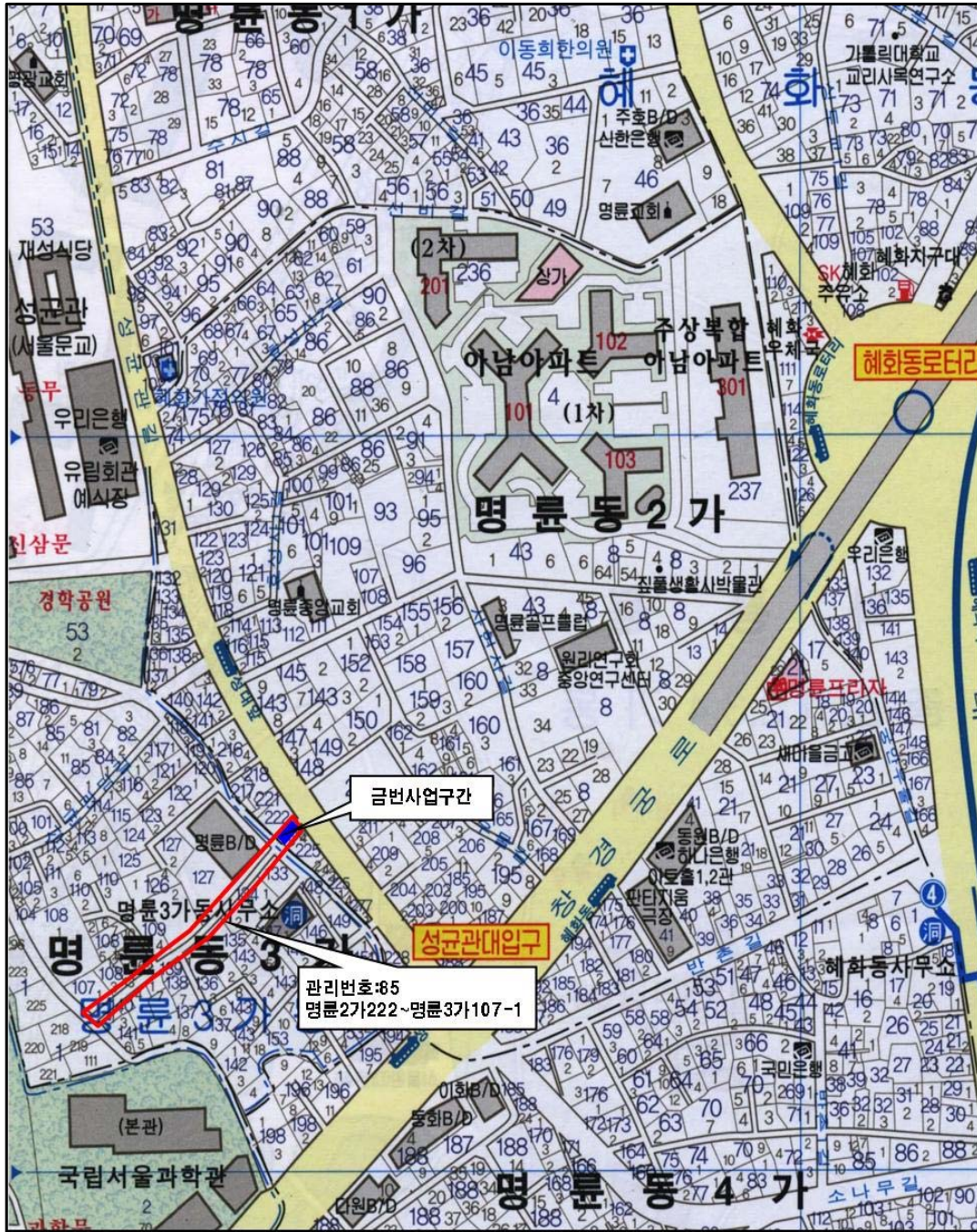
연 번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제 지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비 고	소 제 지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비 고		
1						없 음			명륜동 2가225	건물 (1층)	세 펜 브릭 조/완 벽 지붕	21.1	진 화 자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137-2				추가 편입		

영 업 권 변 경 인 가 조 서

- 공사명 : 명륜동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 유 자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없 음				성 명 : 이은석 주 소 : 명륜동3가105-1
2							성 명 : 기추자 주 소 : 명륜동3가 108-3

사업지 위치도



**◆ 중구고시 제2008-102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82호(2006.12.28)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56호(2007.06.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7-99(2007.12.20)호 및 제2008-39(2008.06.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구 충무로1가 26-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
다. 사업의 규모 : 지하층연결로 설치(변경 없음)

- 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건설관리과(☎2260-40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중 구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12외 2필지(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
2) 명칭 : 하이해리엇건물~충무로지하상가간 지하층연결로 설치공사

면적(㎡)	길이(m)	폭(m)	시설결정고시
48.47	3.54~6.569	4.908~5.499	서울시중구고시제2006-82호(2006.12.28)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명 : (주)월드인월드 김보현
2)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5-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08.12.31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09.06.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변경 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관리과(☎2260-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되고 용산구고시 제39호(2003. 7. 21)로 지적승인 되어 용산구고시 제16호(2007. 5. 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된 『이태원동 118의 20 ~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변경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710-3405) 및 건설관리과(☎710-3401)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 용산구고시 제2008-8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1. 서울시고시 제253호(2002. 7. 2)로 시설결

- 가. 사업시행지(변동없음) : 이태원동 118의20 ~ 118의19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명칭 : 이태원동 118의20 ~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규모(변동없음) : B = 8m, L=45m
- 라. 사업시행자(변동없음)
- 성명 : 용산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5번지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고시일 ~ 2009. 12 .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붙임 변경 토지, 물건 및 영업권조서 1부.

변경 토지 조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25번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명 : 이태원118-20~118-19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이해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모자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변경사항 없음						
8	이태원동118-89 (변경 전)	대	130	130	대	용산구 이태원동118-19	박만식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이태원 지점)	근저당권	118-19	
	이태원동118-89 (변경 후)	대	123	123	대	용산구 이태원동118-19	박만식	(주)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이태원 지점)	근저당권	118-19	
						“이 하여 백”						

변경물건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25번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명 : 이태원118-20~118-19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면적 (㎡)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이태원동 118-20													
2	이태원동 118-72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편입 면적 (㎡)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이태원동 118-72							“변경사항없음”					
4	이태원동 118-72							“변경사항없음”					
5	이태원동 118-72							“변경사항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평면 면적 (㎡)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이태원동 118-72												
6	이태원동 118-74								“변경사항없음”				
7	이태원동 118-21								“변경사항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편입 면적 (㎡)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이태원동 118-55								“변경사항 없음”						
9	이태원동 118-19 (변경전)	건물 (1층)	연와조 세멘벽돌 조		113.19		주택, 점포		박만식	용산구이태원동 118-19	(주)신한 은행	서울중구 태평로2가 120 (올림픽선수촌 지점)	근저당권		
		건물 (2층)	연와조 세멘벽돌 조		25.06		주택								
		정화조					1식	정화조							
		대문					1식	대문							
		수도 계량기					2식	계량기							
		전기 계량기					2식	계량기							
		가스 계량기					2식	계량기							
													“이 하 여 백”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m)	면적 면적 (㎡)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이태원동 118-19 (변경전)													
		계			138.25									
		건물 (1층)	연와조 세멘벽돌			78		주택, 점포	박만식	용산구이태원동 118-19	(주)신한 은행	서울중구 태평로2가 120 (이태원 지점)	근저당권	
		건물 (2층)	연와조 세멘벽돌			60		주택						
		가건물 1층	연와 세멘벽돌			1								
9	이태원동 118-19 (변경후)	가건물 2층	연와 세멘벽돌			2								
		창고1층	세멘 조적			4	창고							
		창고1층	세멘 조적			15	창고							
		계단	철제 세멘			3	계단							
		대문	철제				1식	대문						
		담장	블록				1식	담장						
		계량기	수도,진 기,가스					계량기						
계	잔여부분 취득비					인관								
					163									

변경 영업권 조사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25번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명 : 이태원118-20~118-19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및 주소	물건의 종류	영업의 종류	상 호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및종류	
1~6					“변경사항없음”						
					“이하여백”						

**◆ 용산구고시 제2008-87호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08 - 676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
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위 치	면적(m ²)	개발방식	비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주택재개발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재건축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주택재개발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도심재개발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재건축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6,470	주택재개발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7,493	재건축	

나.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의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
시계획과(☎710-3385) 및 지적과(☎
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
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
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광 진 구 청 장

**◆ 광진구고시 제2008-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7-42(2007.
12.6)호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94-16호~중곡동 294-1호 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하여 경미한 변경(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이 수반되어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 변경결정(경미한변경)에 관한 사
항으로 광진구 중곡동 294-16호~중곡동
294-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결
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6	국지	165	광진구 중곡동 294-16	광진구 중곡동 294-1	일반 도로 (구도)	-	'07.12.6	도로/공원 중복결정
변경	소로	3	-	6	국지	165	광진구 중곡동 294-16	광진구 중곡동 294-1	일반 도로 (구도)	-	'07.12.6	근소한 위치변경 (도로/공원 중복결정)

-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 4.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85)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중곡동 221-6호외 7필지 재래시장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광진구 중곡동 221-6호외 7필지	0	(증) 695.0	695.0	-	

-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08-9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28-36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128-36호 일대	0	(증)2,040	2,04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광진구청장

- 1. 결정 취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는 것임.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동대문구청장

- 1. 결정취지
○ 장안4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한 장안동 128-36호외 8필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함.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4.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3),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2127-4479) 및 장안4동주민센터(☎2127-63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08-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의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 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 467번지, 472번지일대 (87,173㎡)
(답십리 245번지의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
- 나. 제한사유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 다.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 ③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 ④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⑤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 ⑥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 관련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 **동대문구고시 제2008-99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동대문 고시 제2008-84호 (2008.11.20)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8-1131호 (2008.11.27)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 공고한 「주민 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1월 2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9-3 외 1필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 다. 사 업 명 : 주민 복지시설 건립
- 라. 사업의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410㎡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정책기획추진단(2127-4505), 건설관리과(2127-4794)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호
- 사업의 종류 : 주민 복지시설 건립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용두동 29-3	대	870.1	박찬수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13-2402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101-1	근저당권	지분 6/26
				(주)형제 카득크	용두동 29-3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101-1	근저당권	지분 10/26
2	용두동 29-10	대	1745	이광우	동대문구 용두동779 신동아 2-501	주식회사 한 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101-1	근저당권	지분 10/26

물 권 조 서

영번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용두동 29-3	1층열차리강	판넬/철골조	51.8	이광우	동대문구 용두동779 신동아 2-501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101-1	근저당권	
		계 단	기 타	1식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권	
		사무실	판넬/철골조	25.1						
		사 위 실	판넬/철골조	15.0						
		작업장지붕	판 넬	381.5						
		2층 사무실	판넬/철골조	164.7						
		2층 바다	판 넬	67.3						
		2층복프레사실	판넬/철골조	7.9						
		2층부품창고	판넬/철골조	51.4						
		2층 창고	판넬/철골조	78.0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번	업 소 명	업 종	대 표 자	건 물 주	비 고
1	용두동 29-3	(주)형제키득크	자동차정비, 주차장	이 광 우	이 광 우	966-8880

◆ **중랑구고시 제2008-64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8-23(2008. 07.17)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하고 중랑구고시 제2008-31(2008. 08.1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망우동 93-9~94-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작성 및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도로과(☎490-3405~9)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 변경 사항 없음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변경)
-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변경)
- 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시행청에 귀속함.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 중앙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중랑구 봉화산길 179 (신내동 66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명 : 망우동 93-9~94-3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권리의 내용		
	소재지 및 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소재지 및 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3번 변동사항 없음																	
4	망우동 93-19	대	5	5×1/2	김경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26 목화연립 디동 102호			망우동 93-19	대	5	5×1/2	이정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26 목화연립 디동 102호	김경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26 목화연립 디동 102호	가등기

물 건 조 서(변경)

사 업 시 행 자 :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중랑구 봉화산길 179 (신내동 662)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명 : 망우동 93-9~94-3간 도로개설공사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소재지 및 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적 지목	소재지 및 주소	이해관계인		지적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변동사항 없음																

◆ **중랑구고시 제2008-66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8-44('08.10.16.)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하고 중랑구 공고 제2008-821호('08.12.4.)로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완료한 중화동 208-3~208-4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도로과(☎490-3405~9)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 변경 사항 없음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변경)
-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 붙임(변경)
- 라. 사업기간 : 변경사항 없음
- 마.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하여 시행청에 귀속함.

토 지 조 서(변경)

사 업 시 행 자 :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중랑구신내동 662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사명 : 중화동 208-3~208-4간 도로개설공사

연 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및 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소	이 해관계인 성 명 주소	소재지 및 주소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소	성 명 주소	
1	중화동 208-50	대	112.2	112.2	박봉찬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 아파트 110-208		중화동 208-50	대	112.2	112.2	박봉찬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 아파트 110-208		변경 없음
2	중화동 208-52	대	70.6	70.6	안동권씨 감사공파 종중 (권병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23		중화동 208-52	대	70.6	70.6	안동권씨 감사공파 종중 (권병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23		변경 없음
3								중화동 208-49	대	82.9	82.9	이종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웨미리 아파트 219동 1105호		신규
4								중화동 208-53	대	48.7	48.7	이종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웨미리 아파트 219동 1105호		신규
5								중화동 208-54	대	49	49	안강숙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2-162		신규

물 건 조 서(변경)

사 업 시 행 자 :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중랑구신내동 662
 사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사명 : 중화동 208-3~208-4간 도로개설공사

연 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및 주소	물건 의 종류	면적 (㎡)	규격 및 구조	소 유 자 성 명	주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소	소재지 및 주소	물건 의 종류	면적 (㎡)	규격 및 구조	성 명	주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소	
1	중화동 208-3	건물	56.7	시멘트블록조	박봉철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3		중화동 208-3	건물	56.7	시멘트블록조	박봉철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3		변경 없음
2	중화동 208-23	건물	30.6	철근콘크리트조	안동권씨 감사공과 중증 (권병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23		중화동 208-23	건물	30.6	철근콘크리트조	안동권씨 감사공과 중증 (권병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16-6		소유자 변경
		건물	30.6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30.6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30.6	철근콘크리트조											
3		건물	10.6	조립식 패널				중화동 208-31	건물	10.6	조립식 패널	신현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2-115		신규
		건물	37.4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37.4	철근콘크리트조											
4		건물	130	판넬/철계				중화동 208	보일 리실	0.5	이종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웨미리아파트 219동 1105호		신규	
		건물	130	판넬/철계											

◆ **도봉구고시 제200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2호(2007.3.15)로 공원조성계획(쌍문근린공원)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10호(2007.3.29)로 지형도면 승인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7-327호(2007.05.17)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하고 도봉구고시 제2007-394호(2007.06.1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 2289-185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45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 조성)
 - 사업의 명칭 : 쌍문근린공원 조성
-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5,897㎡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라. 사업시행자 : 도봉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 변경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쌍문동 산 245	임야	5,897	5,897	장연소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90				

**◆ 도봉구고시 제2008-55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지정 및 기간)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7-32(2007. 7. 12)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관내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지정 및 기간)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 아 래 -

가. 제한지역

구역명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비 고
새동네·안골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동 280번지일원 및 350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68,218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중

나. 제한사유 : 계획의 목적달성 및 원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2008. 12. 31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였으나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으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기간 변경
· 당초 : 2007. 7. 12 ~ 2008. 12. 31까지
· 변경 : 2007. 7. 12 ~ 2009. 12. 31까지

◇ 단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이내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될 경우, 계획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라.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호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중 증축면적 33㎡초과
- 3호 : 토지의 형질변경
- 5호 : 토지분할

- ◇ 다만 다음사항은 예외로 한다
-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마.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 관련도서 및 토지조서는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본관3층 전화 : 2289-1811~3)에 비치합니다.

**◆ 은평구고시 제2008-10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중학교~은평뉴타운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 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은평구청 토목과(☎350-1406) 및 도시계획과(☎350-138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2	집산 도로	412	불광동 180의12	진관동 산109의20	일반 도로		

○ 결정사유

- 시공중인 뉴타운 입주시 예상되는 증가 교통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고 뉴타운 중로3-15 및 불광동길, 연서로등의 주요 도로와 연결하여 접근성 향상 및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함타운

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2008.03.06)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08-1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우리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5호(2005.05. 19)

2009년 1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 결정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어린이 공원)	변경없음	홍은동 8-158호 일대	A=1552㎡	인가일로부터 2008.12.30	인가일로부터 2009.05.18	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 (2008.03.06)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 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홍은동 8-151호 일대	A=442㎡				

-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8-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

- 1. 우리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5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호(2005.05.19)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6-111호(2006.12.15)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7-33호(2007.04.02)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서대문구청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결 정	비고
			기 정	변 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	홍 은 동 8-247 ~ 8-218호간	B = 8m, L = 213m	인가일로부터 2008.12.30	인가일로부터 2009.05.18	서대문구고시 제2005-70호 (2005.05.26)	
	홍 은 동 9-531 ~ 8-127호간	B = 8m, L = 134m				
	홍 은 동 8-1067 ~ 8-208호간	B = 10m, L = 106m				
	홍 은 동 8-584 ~ 8-985호간	B = 8m, L = 78m				
	홍 은 동 8-977 ~ 8-1361호간	B = 8m, L = 90m				
도시계획 시설사업 (녹 지)	홍 은 동 8-710호일대	A=2,079㎡				

-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8-1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공공지)실시계획
(변경)인가**

1. 우리구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공공지)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4호(2005.05.19)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7-31호(2007.03.27)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 결정	비고
			기 정	변 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 로)	현 저 동 1-144 ~ 산5-60호간	B = 8m, L = 100m	인가일로부터 2008.12.30	인가일로부터 2009.05.18	서대문구고시 제2005-144호 (2005.05.19)	
	현 저 동 산5-5 ~ 1-195호간	B = 8m, L = 280m				
	현 저 동 산5-60 ~ 1-235호간	B = 6m, L = 107m				
도시계획 시설사업 (공공공지)	현저동 산5-60호일대	A = 315㎡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4호(2005.05.19)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7-134호(2007.12.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서대문구청장

**◆ 서대문구고시 제2008-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구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과 관련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 결 정	비고
			기 정	변 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공 원)	현저동 1-43호일대	A = 15,832㎡	인가일로부터 2008.12.30	인가일로부터 2009.05.18	서대문구고시 제2005-69호 (2005.05.26)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 **마포구고시 제2008-9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146호('81.4.2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7-88호 ('07.12.6)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11호('08.3.6)로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역정거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사업시행중인 「홍대역 1번 출입구 이설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마 포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개요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2) 명칭 : 홍대역1번 출입구 이설 및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시설 결정면적 : 5,432.44㎡(금회 변경면적 : 180.44㎡)

2) 규모

가) 정거장 : 면적 지하1~2층 104.81㎡, 연장11.45m, 폭6.6m

나) 출입구 : 면적 지하1층 75.63㎡, 연장33.49m, 폭2.63m

2. 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1) 성명 : (주)토로스아르테미스 문승희외 1인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165-8호 1701호

3. 사업의 시행기간

1) 당초 : 인가일로부터 ~ 2008. 12. 31

2) 변경 : 2008. 3. 6 ~ 2009. 12. 31

3)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금천구고시 제2008-34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 인가 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1. 사 업 명 : 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6-1호 외4필지(면적:8,993.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독산동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신도상가 204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0.04.31.
5. 사업시행인가일(최초) : 2004년12월31일
6. 정비사업(변경)내용
 - 용 도 지 역 : 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공항고도지구
 - 대 지 면적 : 8,815.56㎡
 - 건축 연면적 : 31,321.366㎡
 - 건 폐 율 : 36.60%
 - 건 축 면 적 : 3,226.540㎡
 - 용 적 률 : 249.93%
 - 규 모 : 지하2층, 지상5~15층 4개동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요변경내용
 - 1단지 지하주차 출입구 위치변경 (남측에서북측으로위치변경)
 - 1단지 부대시설(경로당)위치변경 등
- 7.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8. 본 사업과 관련한 관련서류는 금천구청 주택과 에서 열람 또는 문의(02-890-238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고시 제2008-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안)

1. 총고시 제795호(1937.12.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00호(2006. 8.31)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양평동4가 156-1~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 및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일
영평동4가 156-1~2간 도로개설공사	양평동4가 156-1~2	B=8m중 7m(편측), L=120m *신축부지에 한함	인가일로 부터 3년	총 고시 제795호(1937.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00호 (2006. 8.31)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물건 및 영업권조서 : 붙임
-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붙임조서 참조

나. 문의처 : 영등포구청 건축과(☎ 2670-3686)

◆ 강남구고시 제2008-8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우리구 삼성동 91-31호 외3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되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역명	위치	지구단위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1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삼성동 91-31,32,33,34번지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위치변경(3m)	

□ 관계도면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2104-183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8-800호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2005.3.10)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77호(2005.12.1)호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원에 대하여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계획에 의거 도로용지 확장기능 추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종 로 구 청 장

- 사업개요
 - 위 치 : 평동 164번지 일대
 - 면 적 : 200,297.8㎡
 - 정비구역(1·2·3) : 168,105.8㎡(존치포함 - 7,680.1㎡)
 - 대지면적(122,488.6㎡), 공공용지(45,617.2㎡), 공공부담률(8.83%)
 - 도시관리계획
 - 일반(주거·상업)지역, 미관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돈의문뉴타운지구)
- 뉴타운사업 정비 및 관리계획(변경 없음)

- 계획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 변경

구역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대 지	공공용지	
합 계	기정		168,105.8	124,259.1	43,846.7	
	변경		168,105.8	122,488.6	45,617.2	
돈의문1구역	기정	송월동 33-2	152,430.1	111,979.6	40,450.5	존치 5개소 (7,680.1㎡포함)
	변경	일원	152,430.1	110,979.4	41,450.7	
돈의문2구역	기정	교남동 28 일원	6,801.4	5,510.1	1,291.3	
	변경		6,801.4	5,103.4	1,698.0	
돈의문3구역	기정	평동 222 일원	8,874.3	6,769.4	2,104.9	
	변경		8,874.3	6,405.8	2,468.5	

- 정비(예정)구역별 건축계획 변경

구역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율(%)		층 수 (높이m)	주용도	정비 유형
					기준	상 한			
돈의문 1구역	기정	송월동 33-2	111,979.6	60 이하	-	주거:250이하 상업:550이하	주거:23층(70) 상업:23층(70)	주거/ 업무/ 판매	전면 철거
	변경	일원	110,979.4	"	-	주거:253이하 상업:583이하	주거:23층(70) 상업:25층(73)		
돈의문 2구역	기정	교남동 28일원	5,510.1	60 이하	500	650이하	25층(90)	판매/ 업무	전면 철거
	변경		5,103.4	"	"	710이하	25층(90)		
돈의문 3구역	기정	평동 222일원	6,769.4	60 이하	600	800이하	25층(90)	판매/ 업무	전면 철거
	변경		6,405.8	"	"	850%이하	28층(115)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비고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200,297.8	100.0	-	200,297.8	100.0	
주택 용지	소 계	105,876.7	52.9	감)575.6	105,301.1	52.6
	단 독	2,334.3	1.2	-	2,334.3	1.2
	공 동	99,719.3	49.8	감)575.6	99,143.7	49.5
	근린복합	3,823.1	1.9	-	3,823.1	1.9
업무상업용지	23,782.4	11.9	감)1,194.9	22,587.5	11.3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70,638.7	35.2	증)1,770.5	72,409.2	36.1
	도 로	26,307.7	13.1	증)1,893.2	28,200.9	14.1
	공원·녹지	15,568.0	7.8	감)75	15,493.0	7.7
	광 장	700.0	0.3	감)43	657.0	0.3
	공공공지	3,895.0	1.9	감)4.7	3,890.3	1.9
	공공청사	4,010.0	2.0	-	4,010.0	2.0
	의료시설	16,279.0	8.1	-	16,279.0	8.1
	학교시설	2,106.0	1.1	-	2,106.0	1.1
	도서관	1,773.0	0.9	-	1,773.0	0.9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03	4	국지도로	64	교북동 35-7	교북동 10-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3	16	집산도로	202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2	43	16	집산도로	199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10	평동 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07	평동 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5	교남동 10	교북동 8-2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2	교남동 10	교북동 8-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일부구간 확폭(폭3m, 연장770m)
변경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공 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1.0	-	3,201.0	세분류, 주소, 공원형태조정
변 경	공 원	소공원	교북동 10-38 일원	490.0	-	490.0	세분류, 공원형태 조정
변 경	공 원	소공원	교남동 10 일원	834.0	감)75.0	759.0	세분류 변경, 면적 변경

○ 광장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광 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700.0	감)43.0	657.0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 공공공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4-6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변경

구역명	면 적 (㎡)	대 지(㎡)		공공용지(㎡)			존치면적 (㎡)	부담률(%)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계	168,105.8	116,028.2	114,257.7	43,846.7	증)1,770.5	45,617.2	8,230.9	7.42	8.83
돈의문1	152,430.1	103,748.7	102,748.5	40,450.5	증)1,000.2	41,450.7	8,230.9	7.42	8.31
돈의문2	6,801.4	5,510.1	5,103.4	1,291.3	증)406.7	1,698.0		7.42	14.25
돈의문3	8,874.3	6,769.4	6,405.8	2,104.9	증)363.6	2,468.5		7.42	12.39

※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청 뉴타운사업1과(☎2171-2498), 종로구청 재정비추진단(☎731-1908)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용산구공고 제2008-6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2001.7.10)호로 결정고시 및 용산구고시 제2002-33(2002.6.25)호로 지적승인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1(2007.9.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8-46(2008.8.18)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계동 6의26~한강로2가 15-34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토목과: ☎710-3405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 가. 사업의 위치 : 신계동 5의16 ~ 신계동 5의18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계동 6의26 ~ 한강로2가 15의34간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B=8→12m, L=40m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백만원)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총계	건 수	97	212,762	10	22,581	14	96,376	73	93,805	
	사업비(백만원)	97	889,058	10	223,378	14	244,009	73	421,671	

- 성 명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효원
- 주 소 : 용산구 원효로2가 37-3호 5층
- 마. 사업시행기간 : 2007.9.6~2008.12.2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변경없음
- 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자.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토목과(☎710-34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08-675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률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신규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도로	건 수	80	99,158	4	4,952	8	12,397	68	80,809	
	사업비 (백만원)	80	280,330	4	33,800	8	20,125	68	226,405	
공원	건 수	6	39,064	1	460	5	38,604			
	사업비 (백만원)	6	219,928	1	2,850	5	217,078			
녹지	건 수	6	25,436	3	13,789			3	11,647	
	사업비 (백만원)	6	365,241	3	174,859			3	190,382	
유원지	건 수	1	45,375			1	45,375			
	사업비 (백만원)	1	6,806			1	6,806			
광장	건 수	1	518					1	518	
	사업비 (백만원)	1	1,875					1	1,875	
주차장	건 수	1	740	1	740					
	사업비 (백만원)	1	100	1	100					
방수 설비	건 수	1	831					1	831	
	사업비 (백만원)	1	3,009					1	3,009	
공공 청사	건 수	1	2,640	1	2,640					
	사업비 (백만원)	1	11,769	1	11,769					

○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백만원)

시 설 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m ²)	총 계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 청)
									계	시비	구 비		
도로	이태원동118-20~ 이태원동118-19	1	2008년~ 2011년	8	43	324	4,200	-	4,200	-	4,200	1단계	
도로	이태원동72-25~ 이태원동44-80	2	2008년~ 2011년	8	240	1,942	21,000	-	21,000	10,500	10,500	1단계 (2→1)	
도로	후암동301-1~ 후암동45-40	3	2008년~ 2011년	4	150	740	6,600	-	6,600	-	6,600	1단계 (2→1)	
도로	후암동315~ 후암동261-2	4	2008년~ 2011년	6	319	1,946	2,000	-	2,000	-	2,000	1단계 (2→1)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 청)	
									계	시비	구비		
도로	후암동 2-3~ 후암동 30-79	5	2012년~ 2014년	6	50	362	4,250	-	4,250	-	4,250		2단계
도로	후암동247-50~ 후암동254-5	6	2012년~ 2014년	6	245	1,820	2,500	-	2,500	-	2,500		2단계
도로	이태원동 284 ~ 이태원동 215	7	2012년~ 2014년	8	100	800	2,875	-	2,875	-	2,875		2단계
도로	이태원동260-177~ 이태원동258-340	8	2012년~ 2014년	6	980	5,079	2,625	-	2,625	-	2,625		2단계
도로	이태원동198-13~ 이태원동226-2	9	2012년~ 2014년	6	195	1,373	3,000	-	3,000	-	3,000		2단계
도로	청파1가89-46~ 청파1가93-31	10	2012년~ 2014년	4	130	515	500	-	500	-	500		2단계
도로	청파2가66-8~청파2가1 0-36(10-54~67-6)	11	2012년~ 2014년	6	310	2,168	1,875	-	1,875	-	1,875		2단계
도로	청파2가9-7~ 청파2가10-3	12	2012년~ 2014년	4	70	280	2,500	-	2,500	-	2,500		2단계
도로	용문동38-176~ 용문동38-192	13	2015년 이후	8	38	372	2,000	-	2,000	-	2,000		2단계
도로	청파2가10-7~ 청파2가104-6	14	2015년 이후	6	90	653	625	-	625	-	625		2단계
도로	청파1가97-5~ 청파2가147-1	15	2015년 이후	6	450	3,008	2,125	-	2,125	-	2,125		2단계
도로	서계동73-4~ 서계동58-2	16	2015년 이후	6	50	292	1,375	-	1,375	-	1,375		2단계
도로	서계동194-4~ 서계동33-8	17	2015년 이후	6	500	3,000	4,375	-	4,375	-	4,375		2단계
도로	서계동224-4(224-38)~ 서계동238-9(237-4)	18	2015년 이후	15	340	5,100	25,000	-	25,000	-	25,000		2단계
도로	청파3가3-13~ 선린상고동측	19	2015년 이후	8	198	1,488	3,750	-	3,750	-	3,750		2단계
도로	효창동3-52~ 효창동3-152	20	2015년 이후	6	190	1,140	3,000	-	3,000		3,000		2단계
도로	원효로1가31-16~ 원효로1가83-18	21	2015년 이후	6	51	457	750	-	750	-	750		2단계
도로	원효로3가176~ 원효로3가94	22	2015년 이후	6	170	1,058	625	-	625	-	625		2단계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동자동8-5~ 동자동19-116	23	2015년 이후	6	92	552	625		625	-	625		2단계
도로	후암동80-1~ 후암동102-4	24	2015년 이후	6	135	868	2,625	-	2,625	-	2,625		2단계
도로	후암동105-52~ 후암동236-17	25	2015년 이후	6	180	1,259	3,125	-	3,125	-	3,125		2단계
도로	후암동159-5~ 후암동146-5	26	2015년 이후	6	80	374	1,625	-	1,625	-	1,625		2단계
도로	후암동164-11~ 후암동192-22	27	2015년 이후	6	281	2,472	4,000	-	4,000	-	4,000		2단계
도로	후암동164-40~ 후암동164-41	28	2015년 이후	6	40	240	625	-	625	-	625		2단계
도로	갈월동56-5~ 갈월동54-2	29	2015년 이후	6	200	1,458	2,500	-	2,500	-	2,500		2단계
도로	이태원동123-15~ 이태원동123-10	30	2015년 이후	8	38	304	3,125	-	3,125	-	3,125		2단계
도로	한남동736-11~ 한남동736-11	31	2015년 이후	8	18	147	1,500	-	1,500	-	1,500		2단계
도로	한남동736-5~ 한남동736-46	32	2015년 이후	6	76	477	2,875	-	2,875	-	2,875		2단계
도로	한남동618-8~ 한남동647-39	33	2015년 이후	6	115	814	4,375	-	4,375	-	4,375		2단계
도로	한남동657-2~ 한남동657-84	34	2015년 이후	10	30	665	1,875	-	1,875	-	1,875		2단계
도로	한남동634-16~ 한남동657-98	35	2015년 이후	8	36	287	1,875	-	1,875	-	1,875		2단계
도로	한남동72-7~ 한남동30-9	36	2015년 이후	8	172	1,425	8,500	-	8,500	-	8,500		2단계
도로	한남동32-19~ 한남동32-19	37	2015년 이후	6	80	471	3,000	-	3,000	-	3,000		2단계
도로	한남동272-2~ 한남동272-22	38	2015년 이후	6	70	479	2,625	-	2,625	-	2,625		2단계
도로	한남동253-3~ 한남동273-4	39	2015년 이후	10	163	1,655	1,125	-	1,125	-	1,125		2단계
도로	한남동316-3~ 한남동432	40	2015년 이후	6	407	2,560	15,000	-	15,000	-	15,000		2단계
도로	한남동459-1~ 한남동434-1	41	2015년 이후	6	45	284	1,750	-	1,750	-	1,750		2단계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 청)	
									계	시비	구비		
도로	한남동143~ 한남동125	42	2015년 이후	6	25	137	938	-	938	-	938		2단계
도로	한남동155-11~ 한남동499-4	43	2015년 이후	6	152	976	5,625	-	5,625	-	5,625		2단계
도로	한남동521-2~ 한남동497	44	2015년 이후	6	88	655	1,063	-	1,063	-	1,063		2단계
도로	한남동118-1~ 한남동494	45	2015년 이후	6	90	597	3,375	-	3,375	-	3,375		2단계
도로	한남동466-3~ 한남동510-3	46	2015년 이후	6	92	568	3,375	-	3,375	-	3,375		2단계
도로	한남동512-7~ 한남동510-3	47	2015년 이후	4	120	569	3,000	-	3,000	-	3,000		2단계
도로	한남동174-1~ 한남동97-1	48	2015년 이후	15	85	1,295	2,538	-	2,538	-	2,538		2단계
도로	한남동240-3~ 한남동520-6	49	2015년 이후	10	320	3,285	13,200	-	13,200	-	13,200		2단계
도로	한남동524-45~ 한남동115-3	50	2015년 이후	8~2 0	194	1,140	11,250	-	11,250	-	11,250		2단계
도로	한남동263-4~ 한남30-3	51	2015년 이후	6	60	361	1,500	-	1,500	-	1,500		2단계
도로	한남동736-1~ 한남동736-5	52	2015년 이후	6	72	447	1,813	-	1,813	-	1,813		2단계
도로	신계동1-13~ 신계동16-3	53	2015년 이후	6	74	444	1,125	-	1,125	-	1,125		2단계
도로	신계동(중3-1)~ 신계동1-245	54	2015년 이후	8	110	880	1,000	-	1,000	-	1,000		2단계
도로	신계동(중3-1)~ 신계동(소3-1)	55	2015년 이후	8	60	480	716	-	716	-	716		2단계
도로	한강로3가40-991~ 한강로3가23-1	56	2015년 이후	10	120	1,200	1,738	-	1,738	-	1,738		2단계
도로	한강로1가(광3-9)~ 한강로2가(중1-1)	57	2015년 이후	15	120	1,800	3,263	-	3,263	-	3,263		2단계
도로	한강로2가(중2-1)~ 한강로2가(소2-1)	58	2015년 이후	6	100	600	1,500	-	1,500	-	1,500		2단계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한강로2가(광3-9)~ 한강로2가(중1-1)	59	2015년 이후	10	80	800	3,025	-	3,025	-	3,025		2단계
도로	한강로2가(광3-9)~ 한강로2가(중1-1)	60	2015년 이후	8	100	800	2,075	-	2,075	-	2,075		2단계
도로	한강로3가 40-732~ 한강로3가 40-708	61	2015년 이후	6	85	564	250	-	250	-	250		2단계
도로	한강로1가231-7~ 한강로2가76-2	62	2015년 이후	15	365	5,475	7,240	-	7,240	-	7,240		2단계
도로	이촌동(중1-160)~ 이촌동207-3	63	2015년 이후	18	172	3,096	7,068	-	7,068	-	7,068		2단계
도로	한강로2가(대3-1)~ 신계동(소3-2)	64	2015년 이후	12	155	1,860	4,701	-	4,701	-	4,701		2단계
도로	한강로1가(광3-9)~ 한강로1가(중1-1)	65	2015년 이후	12	125	1,500	2,341	-	2,341	-	2,341		2단계
도로	한강로1가(광3-9)~ 용산동3가1-96	66	2015년 이후	12	215	2,580	4,293	-	4,293	-	4,293		2단계
도로	이촌동212-13~ 이촌동212-2	67	2015년 이후	8	89	712	1,299	-	1,299	-	1,299		2단계
도로	문배동10-3~ 문배동 11-8	68	2015년 이후	6	56	336	1,288	-	1,288	-	1,288		2단계
도로	문배동11-14~ 문배동11-18	69	2015년 이후	6	60	360	1,275	-	1,275	-	1,275		2단계
도로	문배동11-20~ 문배동7-3	70	2015년 이후	8	116	928	2,550	-	2,550	-	2,550		2단계
도로	문배동40-5~ 문배동7-10	71	2015년 이후	8	86	688	1,963	-	1,963	-	1,963		2단계
도로	문배동11-10~ 문배동7-10	72	2015년 이후	8	142	1,136	3,050	-	3,050	-	3,050		2단계
도로	문배동9-1~ 원효로1가120-29	73	2015년 이후	8	146	1,168	3,073	-	3,073	-	3,073		2단계
도로	원효로1가40-66~ 문배동11-10	74	2015년 이후	6	60	360	1,456	-	1,456	-	1,456		2단계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 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 청)
									계	시비	구비		
도로	문배동15-14~ 원효로1가40-18	75	2015년 이후	6	51	306	769		769	-	769		2단계
도로	이태원동44-47~ 이태원동44-47	76	2015년 이후	4	26	103	750	-	750	-	750		2단계
도로	보광동75-1~ 보광동14-2	77	2015년 이후	6	150	1,050	4,500	-	4,500	-	4,500		2단계
도로	보광동80-2~ 한남동549-1	78	2015년 이후	10	490	5,274	3,125	-	3,125	-	3,125		2단계
도로	동빙고동 7-24 ~ 동빙고동 7-2	79	2015년 이후	8	295	2,360	4,425	-	4,425	-	4,425		2단계
도로	용산동2가 5-753 ~ 용산동2가 5-1903	80	2015년 이후	8	70	560	2,500	-	2,500	-	2,500		2단계
광장	이태원동 126-13	1	2015년 이후			518	1,875	-	1,875	-	1,875		2단계
공원	효창근린공원	1	2009년~ 2011년			460	2,850		2,850	2,850			1단계 (2→1)
공원	늘푸른어린이공원	2	2012년 이후			740	1,776		1,776		1,776		2단계
공원	청파어린이공원	3	2012년 이후			1,600	10,800		10,800		10,800		2단계
공원	동자어린이공원	4	2012년 이후			99	549		549		549		2단계
공원	응봉근린공원	5	2012년 이후			7,968	5,163		5,163	5,163			2단계
공원	한남근린공원	6	2012년 이후			28,197	198,789		198,789		198,789		2단계
녹지	이촌녹지	1	2009년~ 2011년			8,117	130,521		130,521	130,521			1단계 (2→1)
녹지	원효녹지	2	2009년~ 2011년			2,252	7,094		7,094	7,094			1단계
녹지	용산 제1녹지	3	2009년~ 2011년			3,420	37,244		37,244	37,244			1단계
녹지	효창2 재개발녹지	4	2012년 이후			511	7,742		7,742	7,742			2단계
녹지	경의선 철도변 녹지	5	2012년 이후			7,589	160,507		160,507	160,507			2단계
녹지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	6	2012년 이후			3,547	22,133		22,133		22,133		2단계

시설명	위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단계
							총계	국비	지방비			
				폭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유원지	노들섬유원지	1	2012년 이후			45,375	6,806		6,806	6,806		2단계
방수 설비	원효로4가118- 18~173-1	1	2015년 이후			831.4	3,009		3,009		3,009	2단계 (1→2)
공공 청사	효창동 255-5	1	2008년~ 2010년			2,640	11,769		11,769		11,769	1단계
주차 장	한남동 611-20	1	2009년			740	100		100		100	1단계

◆ **용산구공고 제2008-676호**
건축허가제한 연장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연장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3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연장 목적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부

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을 연장코자 함

다. 건축허가제한 연장기간

-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일로부터 기 건축허가 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 (2008. 12. ~ 2009. 12. 20)

※ 다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라.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위 치	면적(㎡)	개발방식	비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주택재개발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재건축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주택재개발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도심재개발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재건축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6,470	주택재개발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7,493	재건축	

※ 제한구역 : 도면별첨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5)에 비치】

-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동대문구청장

◆ 동대문구공고 제2008-12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 (1 ~ 3년차)		2단계 (4 ~ 5년차)		2단계 (6년차 이후)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계	건 수	36	66,611	9	29,960	1	960	26	35,691	
	사업비(백만원)		79,783		40,606		1,000		38,177	
도 로	건 수	33	60,495	8	25,441	1	960	24	34,094	
	사업비(백만원)		47,402		14,020		1,000		32,382	
광 장	건 수	1	800					1	800	
	사업비(백만원)		3,500						3,500	
주차장	건 수	1	797					1	797	
	사업비(백만원)		2,295						2,295	
사회복지 시설	건 수	1	4,519	1	4,519					
	사업비(백만원)		26,586		26,586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별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 별	
				폭 (m)	연장 (m)	면적 (m ²)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 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1	2005~ 2009	10	1,810	18,100	5,900		5,900	3,000	2,900		1
도로	장안동 114주변 도로개설	2	2009 이후	6	44	264	900		900		900		1
도로	제기동 149주변 도로개설(중압초교)	3	2009 이후	6	155	930	1,820		1,820		1,820		1

시설별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 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 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장안동 284주변 도로개설	4	2010~ 2011	8	60	480	800		800		800		1
도로	용두동 122~255간 도로개설	5	2011~ 2012	8	410	3,280	1,200		1,200		1,200		1
도로	용두동 52~54간 도로개설	6	2011~ 2012	8	90	720	800		800		800		1
도로	청량리동 235-13호 가각정리	7	2011			26.9	200		200		200		1
도로	답십리동 3~1간 도로개설	8	2011~ 2012	10	164	1,640	2,400		2,400		2,400		1
도로	답십리동 1번지 주변 도로개설	9	2011~ 2012	6	160	960	1,000		1,000		1,000		2-1
도로	제기동268 성일중학교주변도 로개설	10	2012 이후	8	165	1,320	2,580		2,580		2,580		2-2
도로	이문동 343~346간 도로개설	11	2012 이후	8	350	2,800	600		600		600		2-2
도로	신설동 25~89간 도로개설	12	2012 이후	4	120	480	350		350		350		2-2
도로	답십리동 765~ 738간 도로개설	13	2012 이후	10	120	1,200	1,600		1,600		1,600		2-2
도로	전농동 55~60주변 도로개설	14	2012 이후	8	200	1,600	2,800		2,800		2,800		2-2
도로	전농동 60~59간 도로개설	15	2012 이후	8	310	2,480	1,100		1,100		1,100		2-2
도로	제기동 139~250간 도로개설	16	2012 이후	6	390	2,340	800		800		800		2-2
도로	제기동 67~66간 도로개설	17	2012 이후	4	200	800	300		300		300		2-2
도로	용두동 254~255간 도로개설	18	2012 이후	8	245	1,960	2,500		2,500		2,500		2-2
도로	제기동 146~67 간 도로개설	19	2012 이후	6	100	600	880		880		880		2-2
도로	청량리동 449~ 877간 도로개설	20	2012 이후	6	140	840	2,000		2,000		2,000		2-2
도로	종암대교~월곡시 민@ 도로개설	21	2012 이후	10	480	4,800	3,700		3,700		3,700		2-2
도로	전농동 150~152간 도로개설	22	2012 이후	6	290	1,740	950		950		950		2-2

시설별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 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 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청량리동 367~442간 도로개설	23	2012 이후	8	40	320	500		500		500		2-2
도로	청량리동 205번지 도로개설	24	2012 이후	6	18	108	600		600		600		2-2
도로	전농동 46~52간 도로개설	25	2012 이후	8	300	2,400	2,200		2,200		2,200		2-2
도로	신설동 92주변 도로개설	26	2012 이후	4	96	384	130		130		130		2-2
도로	계기동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620-7~620-55)	27	2012 이후	8	50	400	900		900		900		2-2
도로	이문동 220~167간 도로개설	28	2012 이후	6	171	1,026	2,000		2,000		2,000		2-2
도로	이문동 305-93외6개소 도로개설	29	2012 이후	6	282	1,692	2,000		2,000		2,000		2-2
도로	회경동 191~183간 도로개설	30	2012 이후	4	51	204	450		450		450		2-2
도로	전농동 204~206간 도로개설	31	2012 이후	8	70	560	212		212		212		2-2
도로	전농동 199~129간 도로개설	32	2012 이후	6	140	840	230		230		230		2-2
도로	전농동 295~137간 도로개설	33	2012 이후	8	400	3,200	3,000		3,000		3,000		2-2
광장	신이문역 주변 광장설치공사	1	2013 이후			800	3,500		3,500		3,500		2-2
사회복지시설	회경동49-27외 8필지	1	2008~2011			4,519	26,586	3,000	23,586	23,558	28		1
주차장	이문3동 220-20	1	2013 이후			797	2,295		2,295		2,295		2-2

◆ **중랑구공고 제2008-8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6-49(2006. 07. 13)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2007-70(2007. 10. 25) 호로

기 인가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면목 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오니, 본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계인은 의견을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중 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508-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2) 사업의 명칭 : 면목3,8동 주민휴식 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공지	중랑구 면목동 1508-7일대	2,007.7	감)781.8	1,225.9	중랑구고시 제2006-49호 (2006.7.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9.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490-3395~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사업명 : 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		지 목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변경없음	면목3동 1508-7	972.2	972.2	하천	재활용 수집소	국 (채무부)					
2	기정 변경	면목3동 1508-8	286	286	하천	보도	국 (채무부)					
3	기정	면목3동 1509	749.5	749.5	대지	재활용 센 타	중량구	중량구 봉화산길 179				
	변경	면목3동 1509	749.5	233.7	대지	재활용 센 타	중량구	중량구 봉화산길 179				

◆ 중랑구공고 제2008-8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63(2008. 12. 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25-4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삼익아파트앞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하고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25-4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 2) 사업의 명칭 : 삼익아파트앞 가로공원 조성사업
- 다. 사업의 면적 : 6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 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490-3395~8)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면목삼익아파트앞 가로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번	지 적 (㎡)		지목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판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면목동 725-4	60	60	담	담	김영규	강서구 등촌동 366-53					

◆ **도봉구공고 제2008-862호**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12호('76.9.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5-11호('05.3.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랑 기 간 : 2009. 1. 2 ~ 2009. 1. 31(30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6)
3. 재개발사업의 명칭 :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완료 내역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홍제3동 6-1~6-94간 도로개설공사	홍제3동 6-1 ~ 6-94간	폭: 6m 연장: 350m	착공일: 2006.12.15 준공일: 2007.5.31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창천동 361-1~387간 도로개설공사	창천동 361-1 ~ 387간	폭: 6m 연장: 42.3m	착공일: 2007.3.20 준공일: 2007.7.20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북가좌2동 2-21~5-128간 도로개설공사	북가좌2동 2-21~ 5-128간	폭: 6m 연장: 360m	착공일: 2007.3.22 준공일: 2007.7.31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홍은3동 191-2~208-3간 도로개설공사	홍은3동 191-2~ 208-3간	폭: 6m 연장: 124.5m	착공일: 2007.4.4 준공일: 2007.8.23	서대문구청장

4.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16,627.40㎡)
5.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 도봉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당초 : '76. 9. 4 ~ '08. 12. 31
변경 : 1976. 9. 4 ~ 2012. 12. 31
7. 관계도서 및 조서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

◆ **서대문구공고 제2008-8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홍은3동 백련배수지 인조 잔디구장 진입로 확장공사	홍은3동 산26-177 ~산26-178간	폭: 6m 연장: 70m	착공일: 2007.6.4 준공일: 2007.11.5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연희동 104-1 공공공지사업	연희동 104-1	면적:131.6㎡	착공일: 2007.8.8 준공일: 2008.8.18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홍은2동 9-531~8-127간 도로개설공사	홍은2동9-531~ 8-127간	폭: 6m 연장: 105m	착공일: 2008.4.10 준공일: 2008.11.6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홍은1동45-66~홍계3동 266- 286간 도로개설공사	홍은1동 45-66 ~ 홍계3동 266-286 간	폭: 18m 연장: 90m	착공일: 2007.2.24 준공일: 2008.11.25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연희1동446-325~446-156간 도로개설공사	연희1동446-325~ 446-156간	폭: 12m 연장: 55m	착공일: 2008.10.10 준공일: 2008.12.19	서대문구청장

◆ **강서구공고 제2008-1134호**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용역명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설계경기
용역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6 ~ 377-42호간(가로공원길) 부지면적 : 26,400㎡ 연면적 : 25,200㎡ (지하 2층/지상 도로 및 공원) 주차면수 : 지하2층 950면(철근콘크리트조, 자주식)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등 전 분야
예정공사비	25,795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650백만원 (감리용역 제외)
설계경기 목적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지상부 디자인거리조성과 새로운 주차문화의 선 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고품격의 지하부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고자 설계경기방식을 통 하여 우수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경기방식	제한공개경기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건축사(회사) 간의 공동응모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이행 방식이어야 함.

용역명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설계경기
용역설명 신청서교부 및 신청등록	- 교부일자 : 2009.01.08 ~ 1.09 (2일간 - 10:00 ~ 18:00) - 교부장소 : 강서구청 본관6층 토목과
등록서류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 부. 2. 대표자 선임계 1 부. (공동응모할 경우에 제출)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 부.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 부. 5. 응모대표자 인장 (본인 직접등록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심사방법 및 구성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작품 심사 후 위원 명단 공개
공모안 접수	2009년 01월 28일 (수) 18:00까지 (강서구청 본관 6층 토목과)
당선작 발표	2009년 02월 09일 (월) 예정
수상작품 및 보상	- 최우수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사업취소시 보상금 1,000만원) - 우 수 작(1점) : 상금 500만원 - 가 작(2점) : 상금 200만원
기 타	- 설계지침서는 강서구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공지사항)에 게재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등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거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는 등의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처리 됨 -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을 할 때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53(화곡동 980-16) 강서구청 본관6층 토목과 - 우편번호 : 157-701 - 전화 : 02)2600-6935 전송 : 02)2600-6180

2009년 1월 2일

강 서 구 청 장

◆ 구로구공고 제2008-7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5-76호 (2005.9.2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건설과(☎860-3126)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99-1~190-1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도로개설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8m, 연장 31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번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명칭 : 덕일진자공고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실 용 상 황	성 명	소 유 자		성 명	이해관계인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포지번)	
						성 명	주 소						
1	구로구 오류동199-23	학교용지	12	운동장	학교법인정 문학원	오류동 199-1						일부현황도로 (199-19)	
2	구로구 오류동202-7	대	17	도로	정정순	오류동 202-1 현대빌라 103-101(지분29.12/361)							(202-1)
					홍기은	오류동 202-1 현대빌라 103-102(지분29.77/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19-1(오류 동지점)	근저당				
					이순옥	고척동 326 청구아파트 104-404(지분32.52/361)	신용보증 기금	마포구공덕동254-5 (영등포지점)	기압류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19-1(오류 동지점)	근저당				
					정혜순	영등포구문래동3758-52 (지분29.12/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19-1(오류 동지점)	근저당				
					이은주	관악구신림동251-307 (지분29.77/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19-1(오류 동지점)	근저당				
					이용길	오류동 202-1 현대빌라 103-203(지분32.52/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19-1(오류 동지점)	근저당				
		조정진	동작구동작동57-24 (지분29.12/361)										
		이미순	오류동 202-1 현대빌라 103-302(지분29.77/3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실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	구로구 오류동202-7	대	17	도로	홍부희	오류동202-1 현 대 빌 라 103-303(지분32.52/361)				
					이정희	오류동202-1 현 대 빌 라 103-401(지분29.12/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9-1(오류 동지점)	근저당	
					김계섭	오류동202-1 현 대 빌 라 103-402(지분29.77/361)	국민은행 최석길	오류동81-77	근저당 전세권	
3	구로구 오류동194-19	대	43	대지	박은순	수원시권선구세류동230-5 (지분27.88/36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279-1(서울 대출실행센터)	근저당	
4	구로구 오류동194-21	대	18	도로	박정혜	오류동194-8	오류2동세마 을금고	오류동156-100	근저당	일부현황도로 (194-8)
					김만섭					
5	구로구 오류동194-22	대	2	도로	성성용	구로구오류동147-2				(194-12)
6	구로구 오류동190-12	전	170	도로	성성용	구로구오류동147-2				(190-1)
7	구로구 오류동191-4	답	4	고물상 부지	이종석	강남구대치동316은마아파 트5동1014호				(191-2)
8	구로구 오류동191-5	답	6	고물상 부지	이종석	강남구대치동316은마아파 트5동1014호				(191-2)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m ³)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구 오류동 199-23	담장	직벽돌	H=1.7m L=8m	담장	오류동199-1				(199-19)
		웬스	능판형 (철제)	H=3.3m L=8m	웬스					
2	구로구 오류동 194-19	건물	조적식	9	방 주방	오류동194-8		오류2동세 마을금고		근저당 (194-8)
		창고	목재	9	창고					
		담장	시멘트블럭	H=1.7m L=18m	담장					
3	구로구 오류동 190-12	담장	합석	H=2.5m L=19m	담장	오류동191-2 고물상			(190-1)	
4	구로구 오류동 191-5와 191-2	중량계	철재	17	중량계					정운구

◆ 금천구공고 제2008-570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률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백만원)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계	건 수	16	100,109	7	48,707	6	5,804	3	45,598	
	소요예산		216,752		205,541		3,970		64,621	
도로	건 수	13	82,932	5	42,108	6	5,804	2	35,020	
	소요예산		173,704		116,324		3,970		53,410	
사회복지 시설	건 수	1	3,959	1	3,959					
	소요예산		21,122		21,122					
공공 청사	건 수	1	2,640	1	2,640					
	소요예산		10,715		10,715					
공원	건 수	1	10,578					1	10,578	
	소요예산		11,211						11,211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명	위 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m ²)	총계	국비	지 방 비			
									계	시비	구비	
도로	시흥동 903의7 ~시흥동 912	1	2007 ~2010	B=20m	L=651m	13,000	41,925		41,925	41,875	50	
도로	시흥동산118 ~시흥동230의5	2	2003 ~2010	B=12m	L=815m	9,780	22,792		22,792		22,792	
도로	시흥동 792의1 ~시흥동 831의6	3	2001 ~2010	B=10m	L=1,540m	15,400	38,346		38,346		38,346	
도로	시흥동 424의2 ~시흥동 937의1	4	2005 ~2010	B=10m	L=364m	3,640	12,961		12,961		12,961	
도로	가산동64-3 ~가산동82	5	2009	B=6m	L=48m	288	300		300		300	

시설명	위 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m2)	총계	국비	지 방 비			
									계	시비	구비	
사회복 지시설	시흥동267-9외 19필지	6	2008~ 2010			3,959	21,122	3,091	18,031	4,505	13,526	
공공 청사	독산동973-17외 3필지	7	2009~ 2011			2,640	10,715		10,715	1,150	9,565	
도로	시흥동212-5 ~시흥동214-12	8	2012 ~2013	B=6m	L=140m	840	410		410		410	
도로	시흥동220의 2 ~시흥동204의 1	9	2012 ~2013	B=6m	L=104m	624	520		520		520	
도로	시흥동 248 ~ 시흥동228의 34	10	2012 ~2013	B=6m	L=372m	2,232	610		610		610	
도로	시흥동202 ~시흥동203	11	2012	B=6m	L=32m	192	160		160		160	
도로	독산동산6-1 번지일대	12	2012 ~2013	B=8m	L=70m	560	420		420		420	
도로	시흥동113-42 ~시흥동113-32	13	2012 ~2013	B=12m	L=113m	1,356	1,850		1,850		1,850	
도로	독산동441의6 ~독산동468-2	14	2014년 이후	B=20m	L=485m	9,700	11,410		11,410	11,410		
도로	시흥동113-119 ~시흥동982-21	15	2014년 이후	B=12m	L=2,110m	25,320	42,000		42,000	19,550	22,450	
공원	독산동441-6일 대	16	2014~ 2017	B=100 m	L=100m	10,578	11,211		11,211		11,211	

3. 관계도면 : 생략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1척 (기선1척)	암사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12.22. ~ 2011. 03.09.	2008.12.19.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대표 류진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7	한강공원 난지지구 수면상	61㎡	선박 정박	2009. 1. 1 ~ 2009 2. 28	2008.12.26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씨앤한강랜드 임종정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서울 시계내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하류 구간	선박 1척 (요트 1척)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선박운항	2009. 1. 1. ~ 2009. 12. 31.	2008.12.29.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파라다이스 운상덕
3. 점용자의 주소 : 성북구 정릉동 778-1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6(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534㎡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아리랑 하우스 흥정희
3. 점용자의 주소 : 동작구 동작동 102-29 금강빌라 101
4. 점 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427-7(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246㎡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화창레저산업(대표 조현찬)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잠원동 121-9
4. 점 용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121-9번지(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1,153㎡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주)퍼스트오리진 대표 이정식
3. 점용자의 주소 : 송파구 잠실동 1-2
4. 점 용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2 번지(한강)
5. 점 용 면 적 : 1,625㎡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설치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세븐마린레저 대표 조용래
3. 점용자의 주소 : 용산구 이촌동 361

- 4. 점 용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61(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428㎡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세븐마린레저 대표 조용래
- 3. 점용자의 주소 : 용산구 이촌동 361
- 4. 점 용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61(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967 ㎡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화창레저산업(대표 조현찬)
-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잠원동 121-9
- 4. 점 용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121-9번지(한강)
- 5. 점 용 면 적 : 총 705 ㎡
-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 강
- 2. 점용자 성명 : (주)퍼스트오리진 대표 이정식
- 3. 점용자의 주소 : 송파구 잠실동 1-2
- 4. 점 용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2 번지(한강)
- 5. 점 용 면 적 : 152㎡
- 6. 점 용 목 적 : 장애인 진·출입로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퍼스트오리진 대표 이정식
- 3. 점용자의 주소 : 송파구 잠실동 1-2번지
- 4. 점 용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2 (한강)
- 5. 점 용 척 수 : 선박 4척
- 6. 점 용 목 적 : 유선 및 수상레저 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화창래저산업 대표 조현찬
- 3. 점용자의 주소 : 서초구 잠원동 121-9번지
- 4. 점 용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121-9번지 한강
- 5. 점 용 척 수 : 선박 1척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즐거운서울 대표 신재직
- 3. 점용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1 제2층 3호
- 4. 점 용 위 치 : 잠실대교 ~ 방화대교(서울시계 내 한강)
- 5. 점 용 척 수 : 선박 10척(동력보트)
- 6. 점 용 목 적 : 도선사업(수상관광콜택시)을 위한 선박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파라다이스 운상덕
- 3. 점용자의 주소 : 성북구 정릉동 778-1
-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6번지 (단, 동력보트: 밤섬 앞 ~ 노들섬)
- 5. 점 용 척 수 : 선박 12척(동력보트 2척, 무동력보트 10척)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씨앤한강랜드 대표이사 임중정
- 3. 점용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 4. 점 용 위 치 : 한강(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송파구 잠실동 1-2, 영등포구 양화동 47 마포구 합정동 465-7, 광진구 자양동 131, 성동구 성수동1가 494-1, 마포구 상암동 48, 영등포구 양화동 95)
- 5. 점 용 면 적 : 총12,628㎡
 - 여의도 : 3,248㎡ (노들나루1,710.21㎡, 진성나루1,538.13㎡)
 - 잠 실 : 2,336㎡ (누에나루1,549.74㎡, 진주나루 786㎡)
 - 양 화: 1,515㎡, 잠두방: 797㎡, 뚝 섬 :3,470㎡, 상암 : 588㎡
 - 서울숲 : 382㎡, 선유도: 292㎡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12.31(1년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씨앤한강랜드 대표이사 임종정
- 3. 점용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 4. 점 용 위 치 : 한강(잠실수중보하류 ~ 방화대교)
- 5. 점 용 내 역 : 유람선7척(엘페1호,엘페2호, 유셀알파호,유셀베타호, 씨앤한강 랜드호, 우바호, 퍼블릭스페이스호)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 2009. 12. 31(1년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삼세룡 대표이사 임익용
- 3. 점용자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8
- 4. 점 용 위 치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8 한강
- 5. 점 용 면 적 : 3,030m²(유선장)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9.1.1~2009.12.31(1년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주)삼세룡 대표이사 임익용
- 3. 점용자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8
- 4. 점 용 위 치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8 한강
- 5. 점 용 내 역 : 선박 2척(유선1, 정박1척:64m²)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및 정박
- 7. 점 용 기 간 : 2009. 1. 1.~2009.12.31(1년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온(ON)대표 김무생
- 3. 점용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714-15
- 4. 점 용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2 한강
- 5. 점 용 면 적 : 1,151m²
-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유선장
- 7. 점 용 기 간 : 2009. 1. 1. ~2009.12.31(1년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2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온(ON) 대표 김무생
3. 점용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714-15
4. 점 용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2 한강
5. 점 용 내 역 : 선박 3척(유선1척, 정박2척:50m²)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및 정박
7. 점 용 기 간 : 2009. 1. 1.~2009.12.31.(1년간)

사업소공고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중부소방서공고 제2008-7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2009년 1월 2일
중 부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 (등급 및 분야)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주부 2008-4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최 낙 훈 (110111-03*****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	2008.12.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233-1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08-49호
위험물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행정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위험물제조소(이동탱크저장소)를 행

정처분(허가취소) 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기간)	적용법규
오성석유 소속 이동탱크저장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555-1)	안인애	위험물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 제26-0296-050422호 (2005.04.22)	상치장소 미확보	「위험물안 전관리법」 제14조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5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2245-7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소방서공고 제2008-3호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고 및 공시송달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록취소)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중 랑 소 방 서 장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의 종류 (처분일)	적용법규
유정씨엠 주식회사 [중랑구 묵동 239-77]	박종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중랑2001-3호] (2001.0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에 따른 3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2008.12.24)	「소방시설공사법」 제4 조 제1항 ·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 나목
○ 보조기술인력 해임(2008.12.24) 박종우 - 소방기술인정자격(2004-서울-002336)					

1.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중랑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3.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처분청(중랑소방서장)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랑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3423-20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8-38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1호다목·제2호나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구 로 소 방 서 장

상 호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비 고
(주)백승이앤씨 (☎ 2678-7351)	구로구 신도림동 410-15 안성기계공구상가 비동 310호	제구로 2005-14호	2005. 04. 27.	이종운 노복자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처 분 사 유	위반법규	처분의 종류 (처분일자)	적용법규		
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 1차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2차 행정처분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영업정지 3월 (2008.12.23 ~ 2009.03.2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1호다목·제2호나목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8-39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였기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구 로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 용 법 조 항
소방시설 관리업 [제구로 2008-4호] (2008.12.24)	대안엔지니어링	박종한 (59100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0-4 도림베어스타워304호 (☎ 525-5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18-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8-5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미달(기술인력)로 1차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 명령)기한내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발부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강 남 소 방 서 장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예방과 - 22244

시 행 일 2008. 12. 24.

수 신 (주)미화공영 대표 김정하 귀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지하10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2. 당사자	성명(명칭)	김정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지하103호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미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영업정지 3월			
5. 법 적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제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9조 【별표1】 2.개별기준나목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주 소	강남구 무동도길 47(삼성동 171-3)		
		기 한	2009년 1월 23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서명 또는 인)</p> <p>강남소방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 연락처

- 전 화 : 568-1191
- E-MAIL : fire1018@seoul.go.kr
- FAX : 2052-0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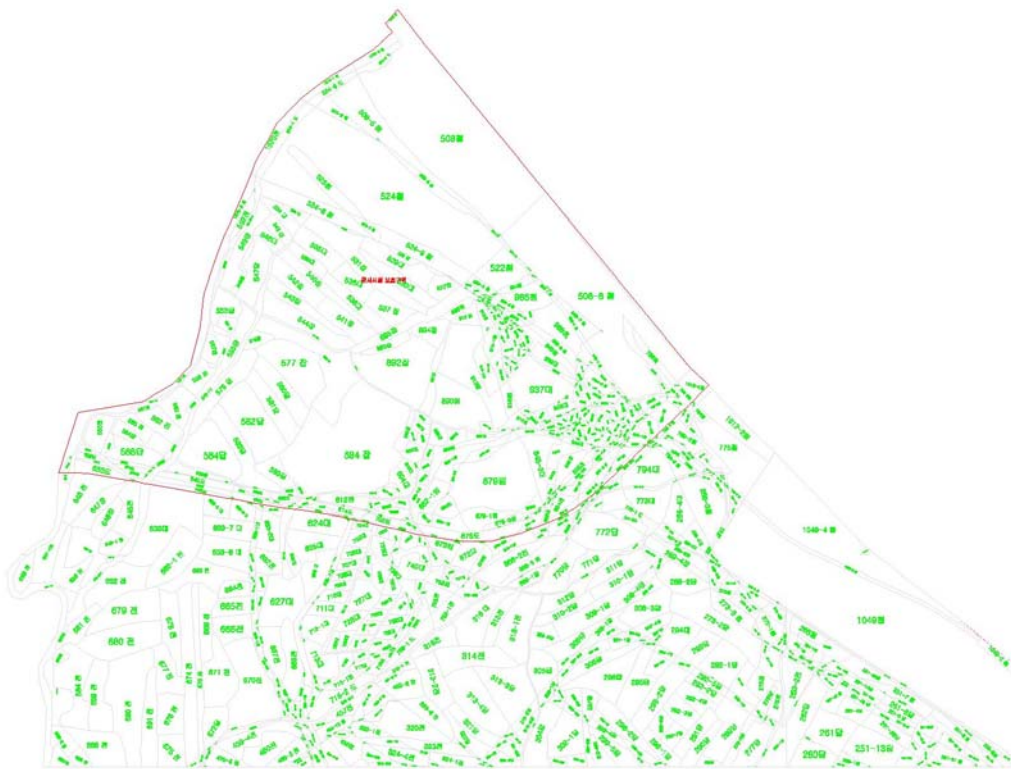
기 타

◆ 제2008-4호 지형도면고시(육군제60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제60보병사단장

1. 지역 ·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구분 : 제한보호구역
나. 위치 : 마포구 상암동 일대
다. 면적 : 280,900㎡
2. 지형도면등(Click시 지형도면 확인 가능
토록 아이콘화 표시가능)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 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3번지 등 8필지
(변 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3번지 등 9필지
 - 면 적 : (당 초) 9,852.6㎡(영구: 2,093.6㎡, 일시: 7,759.0㎡)
(변 경) 9,711.4㎡(영구: 2,306.4㎡, 일시: 7,40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긴급사고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비상관로 설치
 - 개 요 : (당 초)·압입추진(D=1,500mm) L=823.0m
 - 작업기지(전진기지, 도달기지) 2개소, 임시가물막이 1식
 - 공사차량 진입로 및 작업장 등 1식
(변 경)·압입추진(D=1,500mm) L=876.5m
 - 작업기지(전진기지, 도달기지) 2개소, 임시가물막이 1식
 - 공사차량 진입로 및 작업장 등 1식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0-8번지 등 5필지(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33-1번지 등 18필지(좌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16-32번지 등 5필지(좌안)
 - 면 적 : 6,000㎡(영구: 5,950㎡, 일시: 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산책로 설치
 - 개 요 : ○ 영구
 - 산책로: 세립 칼라투수콘 3,702㎡ (L=2,068m, B=1.5~2.0m)
 - 식생블럭 옹벽: L=269m, H=1.5m
 - 유출수로부 암거: 2개소(B=2련×4m, L=2.2m, H=1m)
 - 개거 횡단부 슬라브; 4개소(B=1.5~2.0m, L=3.0m, t=25cm)
 - 일시
 - 공사용 자재 적치장 1개소(준공 이전 즉시 철거)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길 544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5-1번지 일원
 - 면 적 : 9,60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사 임시 적치
 - 개 요 : 토사 적치 100,000㎡
- 5. 점용기간 : 2008.12.11 ~ 2009.04.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도시가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 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1~영등포동 2가 94-540번지
 - (변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1~영등포동 2가 94-68번지
 - 면 적 : (당 초) 113.66㎡ → (변 경) 270.46㎡(일시: 53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 개 요 : (당 초) 가스관(250A) L=370m, 정압실(3.4m×4.9m)
- (변 경) 가스관(250A) L=820m, 정압실(3.4m×4.9m)

5. 점용기간 : 2008.09.28 ~ 2013.09.2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번지 ~ 마포구 합정동 67번지
 - 면 적 : (당 초) 1,162.3㎡(일시 7,279.9㎡)
 - (변 경) 1,254.2㎡(일시 7,279.9㎡)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
 - 개 요 : (당 초) 관로매설 L=2,008.4m(D=500mm)
 - (변 경) 관로매설 L=2,004.2m(D=500mm)
- 5. 점용기간 : 영구

정 정

서울시보 제288호(2008.12.26) 140쪽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게재함

(정정전)

연번	사찰명	소재지	보존구역 편입지번	보존구역 편입면적	보존구역 지정일	비 고
2	묘각사	종로구 송인동 178-3	종로구 송인동 72-201,178-3	1221.1	2001.12. 7	
6	조계사	종로구 견지동 45	종로구 수송동 44,44-2,46-35 종로구 견지동 27-5,27-7,27-39,45,53	6519.3	2000. 8.24	
37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73	강남구 삼성동 73,73-1,73-3	63464.9	2000. 8.24	

(정정후)

연번	사찰명	소재지	보존구역 편입지번	보존구역 편입면적 (㎡)	보존구역 지정일	비 고
2	묘각사	종로구 송인동 178-3	종로구 송인동 72-201,178-3	1,221.1	2001.12. 7	
6	조계사	종로구 견지동 45	종로구 수송동 44,44-2,46-35 종로구 견지동 27-5,27-7,27-39,45,53	6,519.3	2000. 8.24	
37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73	강남구 삼성동 73,73-1,73-3	63,464.9	2000. 8.24	